

#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주정지

2017년 7월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전환기정의워킹그룹

#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Sarah Son

Dan Bielefeld

오세혁

Scott Stevens

이영환



TRANSITIONAL  
J U S T I C E  
WORKING GROUP

## 권장하는 인용방법

### 한국어 (번역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서울, 2017).

### 영어 (원문)

“Mapp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Mass Graves, Killing Sites, and Documentary Evidence.”

Seoul: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2017.

## 저자

- Sarah Son 연구팀장
- Dan Bielefeld 기술팀장
- 오세혁 선임연구원
- Scott Stevens 커뮤니케이션팀장
- 이영환 대표

발행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한민국 서울

웹사이트 [www.tjwg.org](http://www.tjwg.org)

이메일 [info@tjwg.org](mailto:info@tjwg.org)

트위터 @TJWGSeoul

전화 02-722-1162

팩스 02-722-1163

ISBN 979-11-975620-8-2

## 감사인사

이 프로젝트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아래와 같은 분들의 조언과 지지, 기술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외부 평가

- Christopher K. Green | 레이던대학교
- Joshua Stanton | One Free Korea
- Clifton Emery | 연세대학교
- 익명의 심사위원

### 보고서 디자인

- 오숙이
- 익명의 지도 시각화 전문가

### 지난 2년 간

#### 격려와 조언해주신 분

- Amanda Watson
- Andrea Gittleman | 미국 훌로코스트 기념박물관 (USHMM)
- Anja Mihr | 독일 흄볼트-비아드리나 거버넌스 플랫폼
- Chris Doten | 국제민주연구소 (NDI)
- Collin Sullivan | 베네테크 (Benetech)
- Curtis Melvin | 존스홉킨스대학교 SAIS 한미연구소 (USKI)
- Dara P. Vanthan | 캄보디아기록보존센터 (Documentation Center of Cambodia)
- Eike Hein
- Evan Summers | 국제민주연구소
- Eric S. Johnson
- Friedhelm Weinberg | 휴리독스 (HURIDOCS)
- Jason S. Park
- Jim Fruchterman | 베네테크
- Joanna Hosaniak |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 Justin Williams | BambooDev.com
- Lynn Lee | 전미민주주의기금 (NED)
- Mark S. Frankel |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
- Megan Price | 인권데이터분석그룹 (HRDAG)
- Patrick Ball | 인권데이터분석그룹
- 김현준 | 고려대학교
- 백범석 | 경희대학교
- 석경화 | 오픈소사이어티재단 (OSF)
- 유형식 | 휴리독스
- 정정화
- 조성재
- 진주현 |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 (DPAA)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핑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감사표를 표합니다.

- QGIS와 OSGEO
- PostGIS
- PostgreSQL
- pgAdmin

## 차례

감사인사	5
요약	8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소개	10
반인도범죄 매핑	11
배경	12
한반도 차원의 전환기 정의	15
인권범죄 매핑 조사의 목적	17
조사결과 해석의 제한	20
조사기록방법	21
개요	21
데이터 수집과 분류	22
데이터 점검과 위치정보 분석	26
데이터 관리	27
인구학적 데이터	28
주요 조사결과	31
목격되었거나 추정되는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32
살해장소	41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48
탈북민들의 조사 참여	52
중간 결론과 정책적 함의	61
향후 조사기록과 애드보커시 활동 계획	64

## **지도, 차트, 도표**

**지도 1** 각 도별 추정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현황 38

**지도 2** 살해장소 주변 추정 매장지 위치 둑음 (예시) 39

**지도 3** 추정 화장터 위치 둑음 (예시) 40

**지도 4** 각 도별 추정 살해장소 현황 46

**지도 5** 물길 주변에 집중분포된 추정 살해장소 (예시) 47

**지도 6** 량강도 혜산시 내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예시) 51

**차트 1** 방법론 21

**차트 2** 참여자 성별 28

**차트 3** 참여자 나이 28

**차트 4** 최종 탈북연도 28

**차트 5** 도 단위 주요 거주지역 29

**차트 6** 북한에서의 인권유린 피해 경험 53

**차트 7** 인권유린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 필요성 55

**차트 8** 유해 발굴이 필요한 이유 55

**차트 9** 유해 발굴이 불필요한 이유 56

**차트 10** 북한의 전환기에 고려되어야 할 매장지 처리 우선순위 56

**차트 11** 가해자 기소와 처벌 필요성 57

**차트 12** 가해자에 대한 조치방법 58

**차트 13**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 필요성 59

**도표 1** 위치 정보의 보안 민감성 25

**도표 2** 참여자 진술의 질적 가치 26

**도표 3** 민감한 위치의 중분류와 소분류 현황 31

**도표 4** 식별된 위치의 지도상 표시방법 32

## 요약

“국제 규범과 기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반인도범죄)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sup>1</sup>

이 보고서는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프로젝트의 첫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 내 반인도범죄 피해사망자 집단매장 추정지, 살해장소, 관련 문서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조사하고 있다.<sup>2</sup> 이 보고서는 수십 년 간의 체계적 인권유린에 대응하여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앞선 2년 간 실시한 탈북민 375명과의 인터뷰로 파악된 세 가지 부류의 위치들에 관한 지도와 개수를 담고 있다.

매핑 프로젝트는 우리가 주목하는 인권유린 증거가 있을만한 위치들을 파악하고, 고유한 위·경도 좌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참여자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위치를 지목하고, 주요 특징정보를 제공한다. 획득한 좌표 정보와 증언 데이터는 분류 단계를 거쳐 지도로 시각화된다.

시각화되는 지도와 관련 증언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되어온 인권유린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만한 그림을 제공한다. 지금은 조사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경향성들도 떠오르고 있다. 이번 첫 보고서에 반영된 조사결과는 매장지들이 대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산악지역에 분포하지만, 감옥 주변이나 일반묘지 구역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살해장소는 강둑, 시장, 교량 근처, 구류 및 수감시설, 야외경기장에 위치한 경향성을 보인다. 비록 지금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수사에 입각한 분석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이 조사는 인권범죄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조사는 미래에 북한 내 현장으로 처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최초대처자들(first responders)의 활동에 도움되고자 하는 목

1.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2017년 2월 13일), 문단68, [http://seoul.ohchr.org/EN/Documents/2016/GIE%20A-HRC-34gf%20add\\_Kor.pdf](http://seoul.ohchr.org/EN/Documents/2016/GIE%20A-HRC-34gf%20add_Kor.pdf)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한국어 번역본).

2.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고, 영어 약호는 DPRK이다.

표도 포함한다.<sup>3</sup> 우리는 조사활동의 일부로서 급속히 진보하고 있는 원격탐지(remote sensing, RS)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향후 북한지역 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위치의 판별과 현장분석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매핑 프로젝트의 경과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도 소개한다. 설문조사로 주요한 책임규명 메커니즘에 관한 탈북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여러 가능한 조치들 중에서 가해자 형사소추, 진실규명, 피해 배상,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매장지 현장조사와 유해발굴 방향 등에 관한 문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매핑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제공자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화시키기 위해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한 관련 전문가들의 더욱 폭넓은 참여를 요청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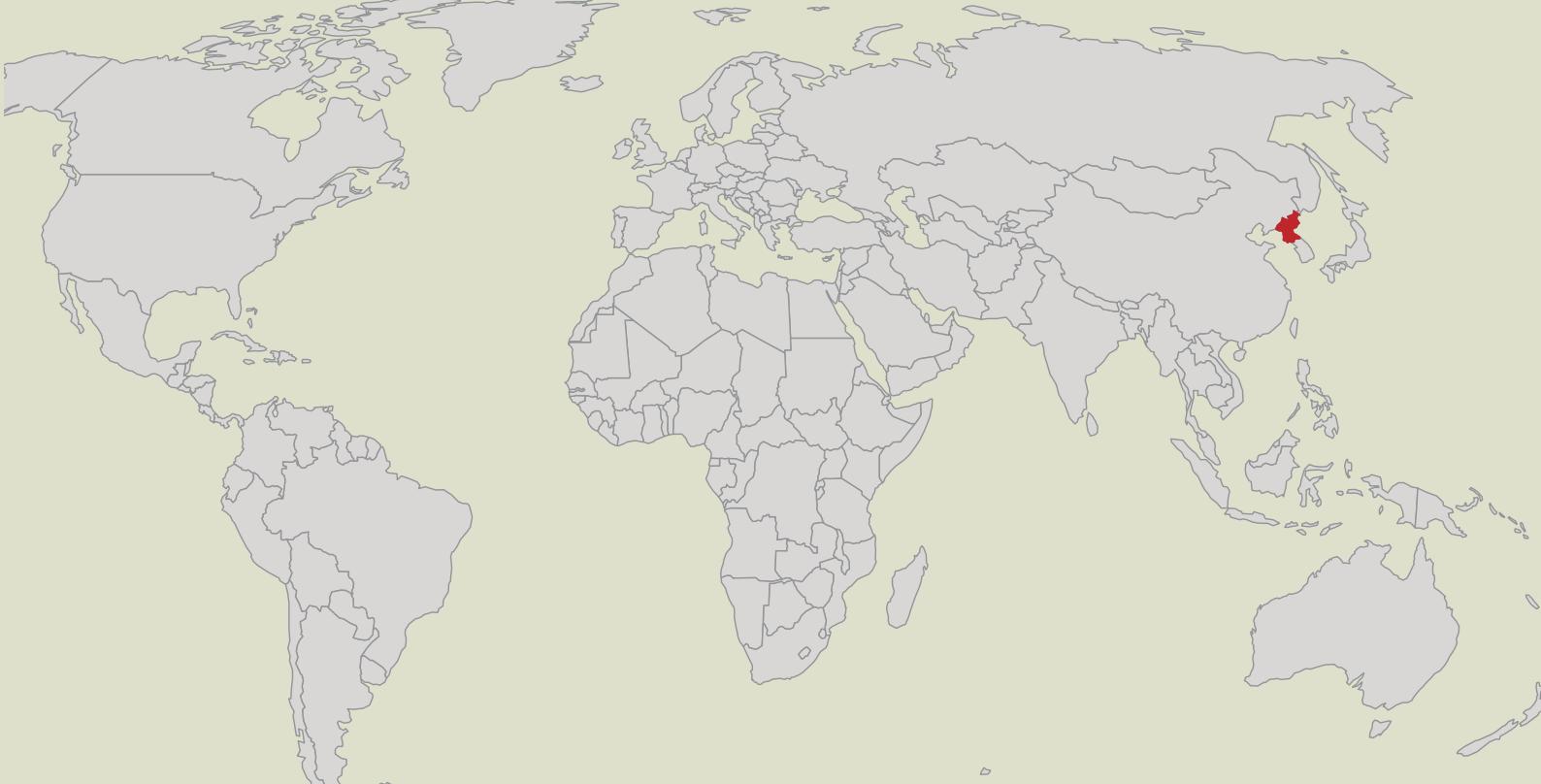
3. 최초대처자들(first responders)의 범주에는 외교적·법적 또는 현실적 난관 때문에 사법기관 수사관들이 범죄현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현장에 먼저 접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및 국제 NGO 관계자, 취재기자, 법과학자, 보건전문가와 그 밖의 민간의 비사법적 행위자들(non-court actors)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rst Responders: Workshop on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of International War Crimes” (Human Rights Center: UC Berkeley School of Law, September 2014), [https://www.law.berkeley.edu/files/HRC/First\\_Responders\\_final\\_with\\_cover4.pdf](https://www.law.berkeley.edu/files/HRC/First_Responders_final_with_cover4.pdf).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소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옹호그룹이다.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의 억압적 정권들이 저질러온 인권침상에 대응하고자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실현에 초점을 둔 단체로서는 한반도에 설립된 첫 비정부단체(NGO)이기도 하다. 우리의 활동목적은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며, 분쟁 상황이나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전환되는 사회들에 도움될 실질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아직 전환기가 도래하지 않은 곳이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 모두로부터 민주주의와 자결권, 평화적이고 합의적인 갈등해소, 공정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공감하는 개인과 그룹들을 있는 가교가 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인권 참상과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에 앞장서는 기관 및 개인들과 협력하고 우리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활동 첫 2년 동안에는 북한 내 반인도범죄 관련 증거가 있을만한 위치들을 조사기록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매핑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였다. 발전되고 있는 조사기록시스템은 파악된 집단매장지와 살해장소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는 각급 국가정보기관, 지역별 경찰기관, 각급 군부대 및 행정기관 위치 등 문서증거가 보관되어 있을 만한 모든 위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위치들을 파악해두는 준비 작업은 향후 지목된 가해자들에게 포괄적 사면(blanket amnesty)이 주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중대 인권침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법과학적 증거와 문서증거의 신속한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몇 가지 보충적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환기 정의 실현 수단들을 한반도에 응용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들과 협력하는 일이다. 탐색 방향은 가해자를 형사소추할 재판소 설립, 진실규명 활동 착수, 피해자 배상 조치 마련, 과거사 기록과 피해자 추모 사업 등을 포함한다. 우리의 활동은 납북피해가족 단체들의 활동을 돋는 것도 포함한다. 우리는 국제전문가들을 남한으로 초청하여 세계 곳곳의 전환기 사례나 전환기 이후 상황에 관여한 경험을 한국의 인권운동가들과 공유하게 하고, 앞으로 북한의 전환기를 대비하는 데에 유용할만한 법적·제도적·기술적·과학적 성취들을 조명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세계 곳곳의 전환기 정의 실현에 기여할만한 발전된 방법과 모범사례를 찾고 확산하고자 아시아지역 인권조사기록 거점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 반인도범죄 매팅

인도에 반하는 죄(반인도범죄)의 정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살해, 절멸, 강간, 박해와 그 밖의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모든 비인도적 행위가 포함된다.<sup>4</sup>

---

4. “1998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PIDS-LT-01-002/11\_Eng, (2002), <https://www.icc-cpi.int/nr/rdonlyres/add16852-aee9-4757-abe7-9cdc7cf02886/283503/romestatuteng1.pdf>. 한국어 번역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http://www.law.go.kr/trtryMInfoP.do?trtrySeq=2176>.

## 배경

”이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 수단을 강구하고, 전환기 정의를 이루기 위한 더 폭넓은 절차를 마련할 때입니다.”<sup>5</sup>

북한 정권은 오래도록 자국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잔혹한 방식의 인권유린을 지속해왔다.<sup>6</sup>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와 보고서는 지난 4년 동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전혀 없이 광범위하게 높였고, 인권유린을 종식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촉구하였다.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유린은 조직적으로 벌어져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얹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로 가해자였던 사람이 심각한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인권침해가 수없이 많이 벌어져왔기 때문에 어떠한 사법시스템으로도 수많은 침해사례들을 모두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의 재판소가 형사절차를 개시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자들에게 우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서는 인권범죄가 일상화되고 조직적으로 벌어져왔다는 점도 난관이 된다. 복잡한 실체를 밝히려면 복합적 수사가 필요하고, 상당한 물적·인적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 조사를 시작하였고, 북한인권문제의 책임규명에 기여하고자 일련의 권고사항들을 만들고 있다.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서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강제낙태, 박해, 고의적 기아, 강제실종을 포함한 반인도범죄가 벌어져왔고, 이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서 비롯

5. Marzuki Darusman, “Statement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ptember 9, 2015, <http://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400&LangID=E>.

6.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4),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된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sup>7</sup>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에서 수십 년에 걸쳐 벌어져온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본질은 “오늘날 세계 어디에도 벼금가는 예가 없는 수준임을 드러낸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sup>8</sup>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주로 정치적 견해와 당국이 지정한 사회계급에 근거하여 저지른 절멸은 국제법상 특정집단살해(genocide)범죄의 현행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여 주민 계급 전체를 제거한다는 북한의 개념은 특정집단살해범죄와 유사한 개념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sup>9</sup>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수임사항 내의 결론으로서 북한에 반인도범죄가 벌어져왔고, 이처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북한의 책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제공동체도 북한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sup>10</sup>

조사위원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2월 유엔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 69/188를 채택하였다.<sup>11</sup> 그러나 회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유지하는 한 변함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규모와 본질에 대한 인식을 비약적으로 높였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게 하였다.

유엔이 임명한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2017년 2월 첫 보고서를 내면서 책임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권고사항들을 토대로 2017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차원에

7.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4), 문단75,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l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8. Michael Kirby, “Statement by Mr Michael Kirby Chair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25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Geneva, 17 March 2014,”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arch 17, 2014,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385&LangID=E>.

9.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문단1157. 당시 국제비영리인권단체 휴먼리버티(Human Liberty)의 위임을 받아 국제법률회사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가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인권상황이 집단살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Independent Report Finds Evidence of Genocide in North Korea,” <http://www.hoganlovells.com/en/news/independent-report-finds-evidence-of-genocide-in-north-korea>.

10.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문단1204.

11. 유엔총회 결의 69/18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 December 2014,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a\\_res\\_69\\_188.pdf](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a_res_69_188.pdf).

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를 평가하고 기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인권이사회 결의에는 북한 지도부와 인권범죄의 책임이 있는 관료들을 궁극적으로 형사소추할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형사전문가들을 임명하는 등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 인권상황 관련 정보와 증거를 수집, 보존, 통합할 별도의 중앙기록보존소 (independent central repository)를 설치하고 향후 책임규명 절차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다.<sup>12</sup> 따라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그러한 기록보존소가 설치되고 이 매핑 프로젝트로 모은 데이터를 선별 제공한다면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뒷받침할 수 있고, 장래 북한정치상황이 변동하는 시기에는 전환기 정의 절차를 세우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12.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34/24,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 March 2017),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34/L.23](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34/L.23).

## 한반도 차원의 전환기 정의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명시된 범죄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심각하고… 이러한 범죄들은 국제적으로 우려할만하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sup>13</sup>

유엔은 전환기 정의를 “한 사회가 과거 역사 속의 대규모 잔학 행위의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 책임을 규명하고, 정의를 세우며, 화해를 이루려는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으로 정의한다.<sup>14</sup> 전환기 정의는 분쟁과 억압적 정부로부터 벗어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겪은 일들을 인정하고, 다시는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거회고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이다.<sup>15</sup> 유엔은 전환기 정의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5개 핵심 요소를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1. 형사소추
2. 진실을 알 권리 보장 촉진
3. 배상 실행
4. 기관 및 제도 개혁
5. 국민적 협의<sup>16</sup>

비록 북한에 언제쯤 전환이 일어나고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전환기 정의 절차의 실행 여부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화해 실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가늠자가 될 것이다.<sup>17</sup>

13.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문단76.

14. 유엔인전보장이사회,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UN Doc. S/2004/616 (2004), 문단8, <https://www.un.org/ruleoflaw/files/2004%20report.pdf>.

15. Buhm-Suk Baek, Lisa Collins, and Yuri Kim, “Transitional Justice in Post–Unification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in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13쪽.

16. “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 General: The United Nations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United Nations, 2010년 3월 10일), 7–9쪽, [https://www.un.org/ruleoflaw/files/TJ\\_Guidance\\_Note\\_March\\_2010FINAL.pdf](https://www.un.org/ruleoflaw/files/TJ_Guidance_Note_March_2010FINAL.pdf).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한국어 번역본은 “유엔사무총장 지침: 전환기 정의에 대한 유엔의 접근” (2015년 6월 10일), [https://www.tjwg.org/ko/include/dn.php?mode=media&file=20160416220442.pdf&rfile=\[Korean\]\\_United\\_Nations\\_Approach\\_to\\_Transitional\\_Justice.pdf](https://www.tjwg.org/ko/include/dn.php?mode=media&file=20160416220442.pdf&rfile=[Korean]_United_Nations_Approach_to_Transitional_Justice.pdf)

17. Baek, Collins, and Kim, “Transitional Justice in Post–Unification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11쪽.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한 결과를 내놓고 북한 정권 지도부와 유책기관들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에 특히 초점을 둔 것을 계기로 전환기 정의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둔 남한 내 시민사회와 국제조직들의 관심주제가 되고 있다.

전환기 정의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방향들 가운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목표로 삼아왔고 계속된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탈북민 사회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북한에 전환기가 도래하고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ownership)을 느끼고 관련 조치의 정당성(legitimacy)을 높일 방법을 탐색한다.
2. **북한에 전환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환기 정의 정책의 구상과 계획이 선행되도록** 기여함으로써 정책 안정성을 높이고, 합당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며, 변화를 장기적 평화와 화해로 이끌 적절한 기관과 제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되도록 견인한다.
3. 전환기가 오기 전에 인권범죄 기록화와 증거 수집에 매진함으로써 **향후 전환기에 이르러 가해자들에게 포괄적 사면이 주어지거나 아무런 처벌 없이 과거를 덮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4. 국제사회의 관여와 국내적 주도성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국제보편기준과 세계의 전환기 사례들의 교훈을 집약하여 반영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역량을 갖추고 합당한 전환기 정의 절차를 실행하도록 돋는다.

이 프로젝트의 초점인 전환기 정의 실현 차원의 책임규명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반영된 유엔의 초점과, 계속되고 있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노력, 유엔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와 부합한다. 증거 수집에 초점을 둔 우리의 조사기록 활동이 미래의 책임규명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적으로 보편 타당한 인권조사기록 방법과 높은 기준을 고수하고, 이 분야에서의 혁신기술과 발전된 조사기록방법을 계속 탐색하고 접목하는 일을 계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 인권범죄 매핑 조사의 목적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후원으로 2015년 4월부터 북한 반인도범죄 증거를 수집·기록하고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기 위한 매핑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인권범죄 관련 위치들은 기본적으로 훼손에 취약하다. 아직 북한 내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현장을 보존할 수 없고, 전문적인 현장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며, 북한 정권과 가해자들이 장래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되는 위치들을 원격으로 파악해 지도화해 둘 필요가 있고, 이로써 언제든지 북한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증거물을 확보할 곳들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현장에 접근 가능한 최초대처자들이 당면할 여러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매핑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면밀하게 기록하는 위치 기반 데이터(location-based data)를 구축 한다.
2.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조사기록물의 양과 유형을 늘려 애드보커시 활동이 다방면으로 전개되도록 돋는다.
3.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향후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피해사망자 유해발굴의 기초자료가 될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여 향후 피해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 및 친지들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돋고, 진실규명조사와 과거사 기록 및 피해자 추념 사업에 기여한다.
5. 증거현장 접근이 어렵고 전환기가 도래하지 않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조사기록 전문가 및 실천가들과 협력하여 과학적·기술적으로 조사방법을 발전 시킨다.
6. 이 프로젝트로 구축되는 위치 기반 데이터(location-based data)와 원격탐지 기술(RS

technologies)을 접목해나감으로써 다른 기관들이 주로 서술 또는 사건 기반 인터뷰(narrative and incident-based interviews)에 기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을 보완 한다.

이 프로젝트의 위치 기반 매핑은 북한 내 체계적 인권침해의 본질과 규모를 드러내는 총체적 지도를 그리는 과정의 일부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의 난관을 식별하고, 이러한 조사의 수요를 가늠하며, 더 나은 개입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기본적 단계에 이르러 있다. 지금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다는 점과 당장의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을 감안하여 현 단계의 조사목표를 심층 수사나 재판소에서 채택할만한 수준의 증거 제공으로까지 확장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인권범죄가 벌어진 곳이나 관련된 장소, 피해자 규모 추정치 등 전반적 인권침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형사사법적 수사에 필요한 잠정적 가설이 설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욱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때까지 미루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조사보고서를 간행하여 지난 2년의 경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까닭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찾고, 이 조사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조사의 엄밀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을 더 초대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사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의 역량과 데이터의 질, 조사기록 및 데이터 관리활용 방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높은 증거력(a comprehensive body of evidence)을 갖춘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조사는 북한인권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권고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활동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여자를 찾고 초대함으로써 이 일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 1차년도 (2015-2016): 조사타당성 평가 단계

첫 1년 동안은 탈북민 100명을 인터뷰하여 이 조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여기에는 디지털 보안 측면에서의 조사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요구사항, 위성지도의 활용, 위치 기록 및 매핑 방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점검사항들이 포함되었다. 기술지원으로부터 인권분야에서의 조사설계, 정보관리에 이르기까지 국내와 해외의 여러 전문가와 기관들로부터 도움 받았고, 이들의 조언과 도움에 힘입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고 발전시켰다.

## **2차년도 (2016-2017): 실행 단계**

두 번째 1년 동안은 개선된 인터뷰 조사 기반을 갖추어 나가면서 탈북민 275명을 추가 인터뷰하였다. 기술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얻는 활동을 계속 강화하였다. 2차년도의 마지막 무렵에 이르러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과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를 포함하여 지난 2년 간의 성과를 이 보고서에 담았다.

## 조사결과 해석의 제한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확정적 결론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조사와 분석이 계속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유형이나 인물정보를 중심으로 ‘사건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온 시민사회 인권 단체와 정부조직이 여러 곳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sup>18</sup> 우리는 타 기관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고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초점인 ‘위치 기반’ 조사와 기록활동은 현존하는 다른 북한인권조사기록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고, 인권범죄가 벌어진 장소나 시설 및 기관의 위치와 더불어 정보제공자가 진술 과정에서 언급하는 인물정보와 증거가 될 만한 단서의 위치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점이다.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각각의 사건을 놓고 향후에 이어이러한 형사사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예단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이 매핑 프로젝트는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자 각각의 형사사법 책임을 따지는 것을 목표하지 않고, 북한에서 벌어져온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조직적 인권범죄의 본질을 최대한 투명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한다. 언제든지 적절한 형사사법 수사가 착수되는 시점이 오면, 그러한 권능이 부여된 기관에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다.

---

18. 이러한 기관들로 시민사회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국책연구기관으로는 통일연구원(KINU), 남한 정부 차원에서는 최근 설립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유엔 차원에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이 있다.

## 조사기록방법

### 개요

우리는 첫 2년의 상당 시간을 타당한 인권조사기록 방법의 기준과 요건을 연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설계하는 데에 할애하였다. 아래의 차트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요약하고 있다.

차트 1: 방법론



조사참여자 모집은 먼저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추천하는 눈덩이표본추출(snowballing)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모집단인 남한 정착 탈북민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적 표본(random sample)이 아니지만, 조사 초기부터 이 방법을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한 최적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sup>19</sup> 조

19. 조사참여자에게는 인터뷰 장소로의 교통비와 1회 식사비로 책정한 소액의 실경비를 지급한다. 왕복교통과 인터뷰에 보통 4-5시간이 소요된다.

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로부터 고지된 승낙(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한다.<sup>20</sup>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do not harm)”는 인권조사기록의 핵심원칙을 준수하여 승낙 받고, 인권조사의 국제보편기준을 준수하여 참여자의 자발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sup>21</sup>

## 데이터 수집과 분류

북한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기관들 가운데 북한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아직 없고, 탈북민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북민 증언 각각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과 북한 내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제시하는데에 조사기관과 정보제공자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전적으로 구두진술에 의존하여 특정인물의 이름이나 구체적 사건정보를 기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특정 위치를 찾는 방식을 지양하고, 인터뷰 단계에서부터 위성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정보제공자와 조사자 모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총 375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하였고, 이 가운데 100명은 1차년도의 조사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275명은 2차년도의 실행 단계에서 실시하였다.

## 인터뷰 진행방법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먼저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향이나 북한에서 살던 동안 가장 친숙했던 지역을 찾는다. 위성사진에는 참여자가 탐색 출발지점을 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대형 건물이나 그 지역 출신이라면 쉽게 알아볼만한 주요시설 명칭이 제한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랜드마크

20. 고지된 승낙(IC)을 받는다는 것은 “참여자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을 모두 적절히 밝히고 참여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인터뷰 승낙을 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진행할 인터뷰 절차의 특징과 정보 수집 이유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언제든지 인터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Handbook on Civil Society Documentation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Washington, D.C.: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Group, 2016), 9쪽.

21. “Broadly Accepted Practices in Human Rights Documentation: Informed Consent,” Human Rights Documentation Toolkit (Washington, D.C.: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Group, 2016), 6쪽. 이 조사에서는 참여자에게 언제든지 인터뷰를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고, 조사자는 제공된 정보의 활용목적을 참여자에게 밝히도록 한다. 또한 참여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지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는 데이터 보안절차와 관리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부연 설명한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탈북민들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염려와 그에 대한 조치 방법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https://www.tjwg.org/mapping/participation.php>.

(landmark)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출처들 중 하나는 북한 매핑전문가인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이 이러한 용도에 적합한 버전으로 공개한 지도이다.<sup>22</sup> 인터뷰용 기본지도는 매우 기본적인 범위로 선별한 장소와 그 명칭만 담고 있는데, 기차역 위치와 철도 노선을 포함하여 참여자가 위성지도 상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주요 랜드마크 정보로만 제한된다. 참여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보만 담은 기본지도를 이용하여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민감한 장소와 기관 등의 위치들을 지목한다. 조사자는 참여자가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정보에 따라 지목된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거나 다각형 또는 셋 이상의 점을 연결한 폴리곤(polygon)을 그려 구역으로 기록한다.

인터뷰는 보통 참여자가 탈북하기 전까지 살았던 북한 내 최종거주지역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어떤 참여자들은 다른 지역의 지도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는 최종거주지보다 더 친숙하게 기억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경우이다. 즉, 북한에서 살면서 더 오랫동안 머물렀거나 주요 거주지(primary residence)였던 것으로 생각하는 지역을 뜻한다. 다음 단계로 조사자는 참여자에게 해당지역의 기차역을 출발점으로 지도상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잡도록 요청한다. 여기서부터 자신이 살았던 마을, 행정기관 사무소, 경찰기관(안전부 또는 보안서), 시장과 같은 민감하지 않은 위치(non-sensitive site)들을 찾아 표시한다. 그러나 위성사진은 하늘을 나는 새의 시점에서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 진행 중에 참여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곳들의 위치를 식별하지 못하고 방향을 잊을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매핑의 시작지점인 기차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잡한 지도보다는 기억에 더 집중하여 땅 위를 걷듯이 왼쪽과 오른쪽 길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듭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참여자의 현재 위치와 지도 상의 진행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데에 도움된다.

## 위치 기록방법

참여자가 지목한 곳을 민감한 위치(sensitive site)로 잠정 분류할지 여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조사자가 판단하는데 세심한 분별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공개처형장소의 경우에는 참여자 본인이 직접 목격하였거나, 공개처형을 목격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경우를 1차 정보출처로 삼아 위치를 기록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거쳐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더라도 중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몇몇 경우에는

22. 비영리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커티스 멜빈이 공개한 북한지도들 중 이 조사에 쓰이는 버전은 제18판이다. North Korea Uncovered, Version 18, June 25, 2009: <http://www.nkeconwatch.com/north-korea-uncovered-google-earth/>. 이 밖에도 우리는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https://www.openstreetmap.org/>), 38노스의 DPKR Digital Atlas (<http://38northdigitalatlas.org>),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NlipMap.do>)을 간헐적으로 참고한다.

조사자의 판단으로 위치를 기록할 수 있다. 처형에 관한 세부정보도 수집하는데,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자들 중에도 처형된 사람의 성별, 나이, 정확한 인원수, 처형이 집행된 날짜나 연도, 그곳에서 얼마나 자주 처형이 벌어졌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참여자마다 불명확하게 기억하는 세부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두고 복수의 증언자들이 제공하는 각각의 정보를 통합하고 교차 비교하여 위치정보와 사건정보의 신빙성 정도를 여러 가지 수준으로 매긴다.

### 위치 분류와 신빙성 평가방법

이 매핑 프로젝트에서는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가능장소 등 위치기반 정보를 모으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standard of proof)는 일반적 형사재판 사건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파악된 장소가 실재하고 정확한 위치라고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가 현 단계의 관건이다. 비록 지금은 북한 내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파악된 위치와 보고된 사건에 관한 현장검증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여러 근거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견인할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수준의 입증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23</sup> 지금은 현장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여건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 현장확인이 가능한 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록하는 모든 위치들을 “추정되는(suspected)” 위치로 간주한다.

현 단계에서는 파악된 위치들을 민감한 위치(sensitive sites)인지 민감하지 않은 위치(non-sensitive sites)인지 대분류한다. 각 위치정보의 보안유지 필요 정도를 좌우하는 민감성(sensitivity)은 북한 정권이 장소를 훼손하려고 할 가능성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한 기준에 따라 매긴다. 매장지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훼손 방식으로는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장소 자체를 은폐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 매장지와 살해장소 모두에 벌어질 수 있는 훼손 방식으로는 총살에 사용된 탄피, 사망자의 옷가지나 그 밖의 형태의 유류품 등 정황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23.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 인권범죄수사 매핑 프로젝트에 적용된 기준과도 비슷한 수준인데, “합리적 의심”이라는 입증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여타의 확인된 정황들과도 일관되는 밑을 수 있을만한 실체가 필요”하다. “Report of the Mapping Exercise Documenting the Most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between March 1993 and June 2003”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ugust 2010), 4–5쪽.

민감하지 않은 위치들은 경찰기관(안전부 또는 보안서)처럼 지역주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곳들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곳들에도 사망 일시, 장소, 이름 등 관련된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곳들의 위치를 우리가 부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이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다른 민감한 위치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경찰기관처럼 대다수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건물 위치들은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로 공개할 경우에도 북한 정권이 공연히 노출된 공공 및 행정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도표 1: 위치 정보의 보안 민감성**

대분류	개념 또는 예시
민감하지 않은 위치 (북한 정권의 훼손 시도 가능성성이 비교적 낮은 곳)	장래의 형사 수사와 인권범죄 재판에 도움될 수 있는 문서증거가 있을만한 곳들로서 각급 경찰기관, 구류시설, 지방행정기관 등 포함.
민감한 위치 (훼손 시도 가능성성이 높은 곳)	처형장소(Execution sites):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 장소.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Body sites):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자의 시체를 매장하거나, 여타의 방식(화장하거나 쓰레기 더미에 섞어 넣거나, 방치하는 등)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시체를 보관하는 곳들.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한, 조사자가 조사참여자들이 지목하는 곳들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참여자가 증언하고자 하는 위치를 지도상에 맞게 지목한 것인지 다른 곳을 착각하였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북한에서의 직업이나 지위, 직책, 인맥과 같이 특정 장소의 용도를 알 수 있을만한 정보의 연결고리가 어떠한지 파악하여 참여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신빙성 정도를 매긴다. 국제적으로도 개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나 방법으로 확립된 것은 아직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대규모 인권유린 조사기록 작업에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애드미럴티 척도(admiralty scale)”를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도로 고안하였다. 정보출처와 정보의 신빙성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매길 수 있는데, 조사의 주요 정보출처 이외의 다양한 정보출처들과 교차확인(cross-checking)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다른 경로나 다른 유형의 정보출처들과의 교차확인으로 확증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이 매핑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지향하는 목표이다. 우리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안하였고 당분간 계속 적용할 애드미럴티 척도는 다음과 같다.

**도표 2: 참여자 진술의 질적 가치**

질적 가치	정보출처와 위치 또는 사건과의 관계
신빙성 증가	직접 봤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
	직접 들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가해자 또는 연루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현장에 없었지만 신빙성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의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소문으로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거나 믿고 있다
신빙성 감소	미상 (관계를 밝히지 않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데이터 점검과 위치정보 분석

조사담당, 기술담당 등 서로 다른 역할의 팀원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데이터 점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1. 조사기록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간의 실수(human error)를 찾아내고 줄인다.
2. 수집한 정보를 조사 및 기록담당자가 일관된 방법으로 기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분류하였는지 재확인한다.
3. 새롭게 나타나는 특수한 유형의 사례를 데이터 형태로 적절히 처리할 방법을 재검토하고 결정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빠대가 되는 항목명(field)의 정의에 개념적 구멍(loophole), 취약점(weakness), 다른 해석(differing interpretation)의 여지가 없도록 재확인하고 보완한다.
5. 조사기록담당자가 요청하는 기록관리시스템 개선요구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의 전체적 현황을 살피고, 각 위치 정보의 중요도를 매기며, 각 위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위치정보 분석을 진행하는데, 교차 지목되었거나 서로 연관된 장소들을 위치군(群)으로 묶는 위치통합(consolidation of sites) 작업이 포함된다. 위치통합 작업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조사결과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 강화는 우리가 특화된 조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왔다.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외부인이나 외부조직이 해킹하거나 우리가 파악한 특정위치를 북한 당국이 인지하여 중요한 현장을 훼손하려고 시도할 위험성을 낮추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디지털 보안, 지리공간정보시스템(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GIS)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과 개별 전문가들에게 적극 문의하고 조언 받고 있다.

## 인구학적 데이터

아래에 이어지는 차트들은 조사참여자의 인구학적 구성을 보여준다.

차트 2: 참여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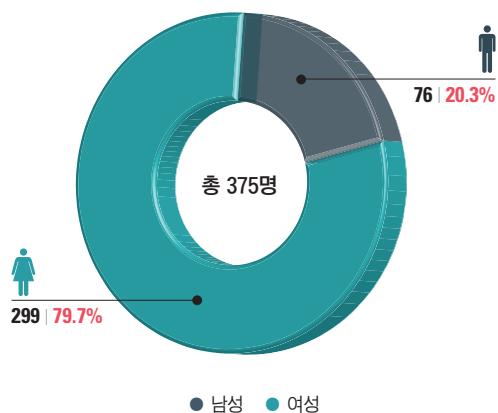


차트 3: 참여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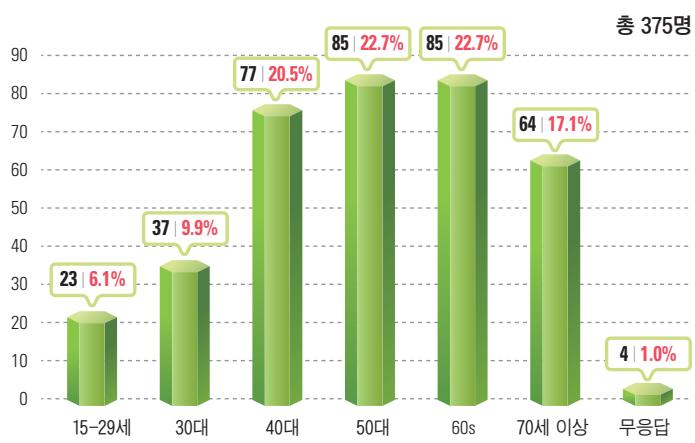


차트 4: 최종 탈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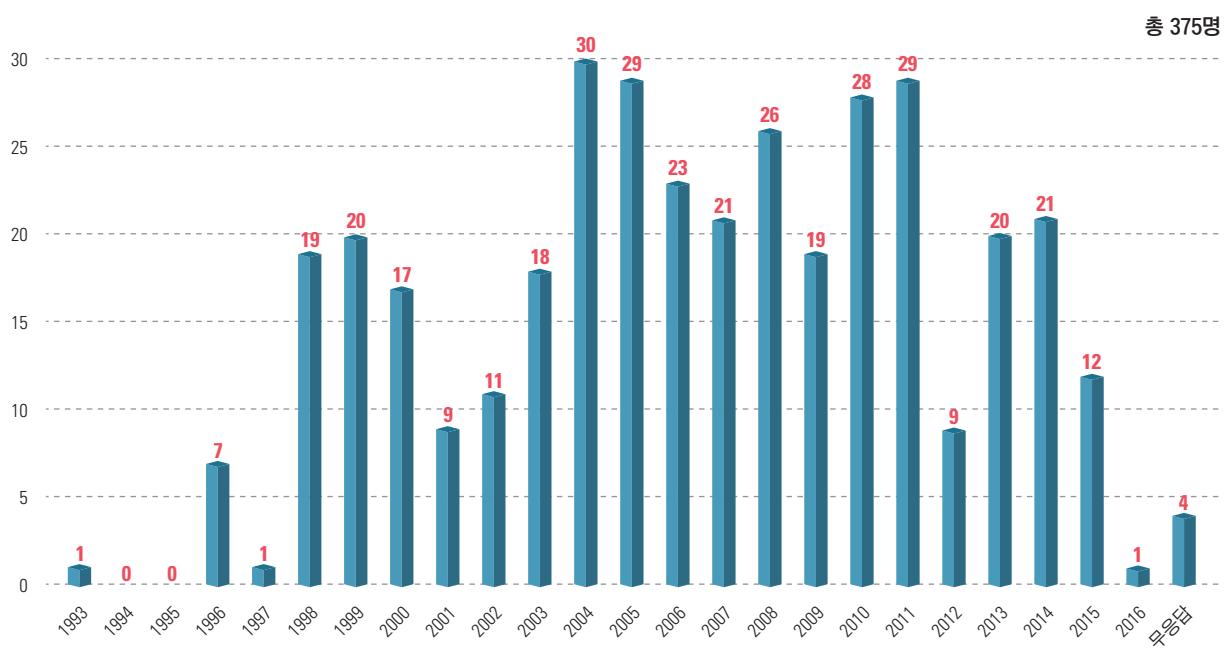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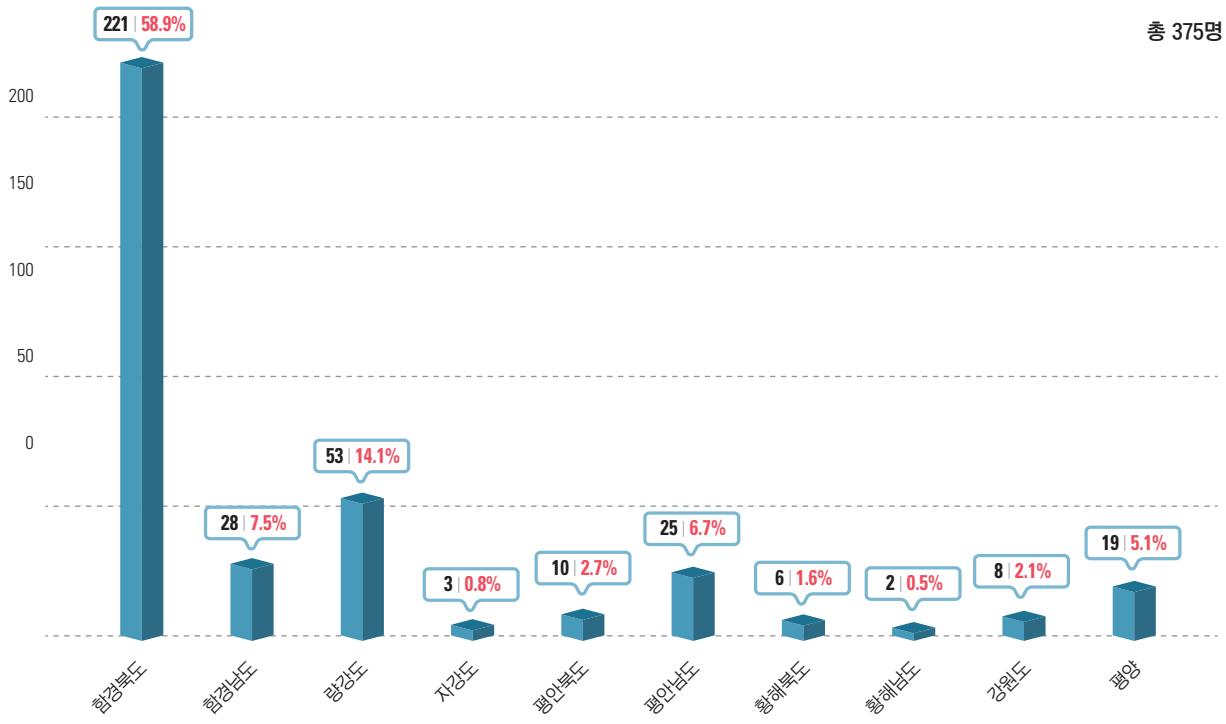


차트 5: 도 단위 주요 거주지역<sup>24</sup>



이 조사의 참여자들, 통계학에서 말하는 조사표본(sample)은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았다. 남한 통일부의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한 입국 통계와 비교해볼 때 여성 비율이 약 9% 더 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남한 정부 통계와 성별 구성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최종 탈북연도에서는 2004년부터 2011년 사이가 가장 많았는데, 입국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남한 정부 통계의 변화추이와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sup>26</sup> 우

24. 북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이 조사에 참여한 일부는 북한을 떠나기 전까지 2개 이상 지역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군사복무, 결혼, 직장배치 또는 교육, 구금, 다른 지역으로의 추방,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 시기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이동, 식량난 이후 장사를 하기 위한 합법적·비합법적 이동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이 차트에서는 여러 지역으로의 이동을 포함하지 않고, 북한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한 곳을 주요 거주지역으로 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25. 남한으로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29,830명이었고, 29%가 남성, 71%가 여성이었다. 이 현황은 기준 시점까지 남한으로 입국한 누계 수치인데, 이들 중 다시 남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갔거나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 수는 이보다 적다. 몇몇 탈북민은 남한에 정착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intro/eGovHanaStat.jsp>.

26.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손으로 꼽을 만큼 적었지만,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 기아가 발생하면서 매년 수천 명씩 대부분 중국과의 국경을 건너 탈북하였다. 탈북한 후에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이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돋는 중개인 네트워크로부터 도움 받는 경우가 많다. 중국 영토 내에서 체포되면 중국이 강제 북송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정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International Crisis Group, October 26, 2006). 대한민국 통일부, “North Korean Refugees & Resettlement,” <http://eng.unikorea.go.kr/content.do?cmsid=3026>.

리 조사 참여자의 과반수는 주로 함경북도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중국과의 국경지역 강을 끼고 있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걸어서 국경에 다다르기에 용이하다. 함경북도는 실제로 가장 많은 탈북민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각 도별 출신 조사참여자 수는 주요 조사결과의 지도1에 시각화한 명암 변화로도 비교할 수 있다).<sup>27</sup>

---

**27.** 북한의 북부 국경지역은 감시가 삼엄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규모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편향성은 이 보고서의 주요 조사결과를 북한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 주요 조사결과

도표3은 지금까지 파악한 위치들의 유형과 각각 지목된 횟수를 보여준다. 다만, 이는 개별 위치들을 같은 속성의 위치군(群)으로 묶는 위치통합 작업을 하기 전 단계(pre-consolidation)의 단순 누계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조사참여자들이 각 유형의 위치를 지목한 횟수를 단순 합산한 값이다. 이러한 지목 횟수는 여러 번 지목되었거나 매우 근접하여 같은 곳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곳들을 묶는 위치통합(consolidation of site) 단계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산출되는 최종 개수를 “묶인 위치(site groups)”라고 부른다. 현재까지는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body sites) 유형에 대해서만 위치통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분석 결과 총 52회 지목된 횟수에서 47개의 위치 묶음이 도출되었다 (지도1의 도별 추정 매장지).

**목격된 매장지는** 조사참여자가 직접 현장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경우에, **매장 추정지는** 현장은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정보출처로부터 들었다고 밝히는 경우에 기록한 위치를 뜻한다.

도표 3: 민감한 위치의 중분류와 소분류 현황

중분류	민감한 위치의 소분류	위치통합 전 개수
B	목격된 매장지	7
B	매장 추정지	35
B	공동묘지 내 매장지	2
B	전쟁포로 묘지	1
B	시체보관소	2
B	노출된 시체 발견 위치	2
B	시체 화장터	3
K	실해장소 – 총살 (회당 10명 미만 총살한 곳)	283
K	실해장소 – 대량총살 (1회에 10명 이상 총살한 곳)	7
K	실해장소 – 교수형	40
K	실해장소 – 화형	1
K	실해장소 – 자의적 처형	2
T	공개재판만 열린 장소	8
총계		393
B – 매장지, 시체처리장소 및 노출된 시체 발견 위치		52
K – 실해장소		333
T – 공개재판만 열린 장소		8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시할 지도 이미지들에서는 이 조사에서 파악된 위치들을 설명하기 위해 도표4에서 와 같이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도표 4: 식별된 위치의 지도상 표시방법**

용어	정의
점(Point)	점으로 표시한 위치. 점은 하나의 위도와 하나의 경도 좌표만 갖는다.
폴리곤(Polygon)	복수의 점들을 연결하여 다각형으로 표시한 구역
위치 묶음(Site Grouping)	<p>위치 묶기(site consolidation) 단계를 거치면서 복수의 점 또는 폴리곤이 같은 속성의 위치군으로 묶인 곳을 가리키지만, 위치 묶음이 하나의 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 매칭되는 정보가 없음을 뜻한다.</p> <p>장소의 유형 및 용도가 같거나 비슷하고, 각각의 위치가 서로 200m 이내에 근접하게 지목된 경우 잡정적으로 같은 곳을 가리킨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위치군으로 묶는다.</p> <p>하나의 위치 묶음이 여러 명의 정보제공자가 지목한 2개 이상의 점 또는 폴리곤으로 구성된 경우, 1개의 구성요소로만 이루어졌거나 다른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위치보다 신빙성이 더 높아진다.</p>

## 목격되었거나 추정되는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집단매장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정의된 것은 없지만, 이 용어는 각 사회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쓰인다. 이 조사에서는 매장지 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망원인이나 가해자들이 사용한 살해수단도 함께 고려한다. 집단매장지는 일반적인 매장지와 다르다. 집단매장지의 개념 정의를 시도한 유엔의 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전투나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사망자가 아닌 초법적 처형이나 약식 처형, 자의적 처형을 당한 피해자의 시체가 3구 이상 한 장소에 묻힌 경우를 집단매장지(mass grave)로 정의한 바 있다.<sup>28</sup> 집단매장지에는 특정한 기간 동안 한 장소에 여러 번 시체를 묻어 결과적으로 여러 구의 시체가 매장되는 것이 보통인데, 공중위생 때문에 시체를 빨리 묻으려고 하거나 기아사태나 대량학살 후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증거를 은폐하려는 욕구가 작용할 때도 그러하다.<sup>29</sup>

28.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Bulletin (1996). Twin Tribunals ICTY9/10, 14-VIII-1996.

29. 특기할만한 사실로 북한은 1998년 화장(火葬)법을 제정하고 2006년 수정보충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하도록 범제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이용한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수십 년 간 계속된 유류 부족으로 실제로는 화장을 꺼리고 매장하는 방법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보다 더 최근의 보도는 화장을 요구하는 북한 당국의 규제에 맞서 사망자 가족들이 장례를 미루거나, 당국의 단속을 피해 한밤 중에 산에 올라 매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규제는 산림녹화 정책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로에서 보이는 산에 수많은 묘비를 세우거나 봉분이 있으면 나라망신이라고 판단해 당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한다고 한다. 최승민, “北주민, 야밤 소달구지에 시체 싣고 산에 오른다는데,” 데일리엔케이, 2015년 4월 30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106031&catald=nk04500>.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를 찾은 반인도범죄에는 절멸, 살해, 강제실종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들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로 파악하고자 하는 위치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sup>30</sup> 조사위원회는 특히 1990년대에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사망하게 한 것도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범죄는 주민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 및 정책에 기인하는데, 이는 현 정치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대다수의 굶주림과 아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sup>31</sup>

다만, 기아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해는 우리가 파악하지 않은 곳이나 일반 공동묘지 구역에 묻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 60년 이상에 걸쳐 납치해간 분들의 가족들과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납북된 분들과 억류된 전쟁포로들 중 사망하신 분들이 묻힌 위치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의 주된 목표는 인권유린에 의한 사망자 시체가 처리된 위치들을 미리 식별하여 장래 현장수사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의 대부분은 매장지이지만, 일부 위치들에서는 시체를 매장한 것이라기보다 방치하였거나, 다른 폐기물 더미 속으로 던져 넣었다거나, 흔적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였거나, 매장 또는 화장하기 전까지 시체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처리방법이나 장소의 용도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body sites)라고 통칭한다. 우리가 찾는 매장지들은 일반 공동묘지 구역에 일부 섞여있기도 하고,<sup>32</sup> 구류시설 인근에 위치하기도 하며, 이 조사에서 식별되지 않은 다른 어딘가에 존재할 수도 있다.

매장지 현지조사와 발굴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의인류학자들은 경험과 기술, 지식을 토대로 유해가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는지 파악하고, 누군가가 급하게 매장한 유해인지, 아니면 망자의 안녕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묻은 것인지 적절히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분석은 장래의 형사사법적 수사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30.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문단76.

31. 앞의 보고서, 문단78.

32. 영국에 위치한 비영리인권단체인 이란을위한정의(Justice for Iran)는 이란 정부가 매장위치 탐지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자 시신 여러 구를 일반 공동묘지 구역에 섞어 매장하였음을 밝혀냈다. 이란을위한정의 Shadi Sadr 대표 인터뷰, 2016년 7월 21일. 단체 웹사이트는 <http://justiceforiran.org/>.

될 것이다.<sup>33</sup>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인권범죄 피해자 매장 추정지를 찾고, 특히 여러 구의 유해가 묻혀 있 을만한 곳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인터뷰에 기반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매장 추정지들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처형되었거나, 북한주민들 이 주로 안전부라고 부르는 경찰기관(인민보안성)이나 흔히 보위부로 알려진 국가정보기관(국가보위성)의 심 문 또는 고문으로 사망하였거나, 구류시설(집결소)이나 더 큰 규모의 일반감옥(교화소)과 정치범수용소(관 리소)에서 급성영양실조, 질병, 그밖에 수감,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묻힌 곳들로 파악되었다. 이밖에 대기근 시기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집단 매장된 곳들에 대한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다. 인권유린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망자 매장지들은 주로 산비탈이나 산골짜기에 위치하거나 육안 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곳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을이나 일반주민 거주지역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경로 로 노출된 유해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가끔 나왔다.

조사참여자, 즉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매장 위치를 찾아주었다. 관리소와 교화소 같은 수감 시설에 수감되었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은 **감옥 매장지들**(*burial sites for prisons*)을 지목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수감시설 밖 근처에 위치하고 지역주민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민가로부터 떨어진 외진 곳인 경향 성을 보였다. 그러나 당국의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참여자는 사망수감자들의 시체가 산비탈 구덩 이에 “버려지듯(dumped)” 해서 소규모의 수많은 매장지 둔덕들이 산을 오르내리는 길에서도 보일 정도였 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는 해당 수감시설을 경비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두 명의 조사참여자는 한 구덩이에 10-15명 정도의 시체가 집단 매장된 장소를 지목하였다. 정치범수용소 재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노역이 별목인데, 상당수의 조사참여자들이 수용소 근처 산으로 별목하러 다니는 길에 수감자들 의 시체를 목격한 경험을 묘사하였다.

다른 조사참여자들은 수감 중 사망한 재소자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사람들을 외부노역을 마치고 교화소 로 복귀하던 중에 목격한 경험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증언자들은 외부노역으로 교화소를 드나들었던 경로의 이동방향,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매장지 위치와 지형적 특징까지 묘사할 수 있었다. 한 조사참여자는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외부로 옮겨 매장하는 과정을 증언했는데, 조잡한 나무 궤짝들로

---

33.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법의인류학자) 인터뷰, 2017년 4월 11일.

시체를 실어 나르는 데에 재소자들이 동원되고, 재소자 대부분이 영양실조와 건강쇠약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 웨짝마다 여섯 명씩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망자 시체매장 작업을 마친 재소자들에게 수감시설 간수들이 포상으로 한 자루의 무를 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출속으로 건축하던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설에 동원되었던 재소자들 중 12명이 넘는 인원이 매몰되어 사망하자 시체를 창고로 옮겨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몇몇 조사참여자들은 수감시설에서 나오는 시체를 처리하는 화장터들의 위치를 지목하였다. 인터뷰 결과, 동일한 수감시설에 서로 다른 시기에 갇혔던 세 명의 전 수감자들은 재소자 시체 여러 구를 화장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일치하는 정황을 증언하였다. 전 수감자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사망자들의 시체가 어떻게 화장터로 옮겨졌는지 설명하였고, 화장터로부터 퍼지는 시체 태우는 냄새를 주기적으로 맡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여름철이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시체를 빨리 소각해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덧붙여 1990년대 초에는 유류 부족으로 수감시설 화장터 사용이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시체를 주기적으로 태우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쌓아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시체를 태울 때에는 시신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기 때문에 모두 완전히 소각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감옥이 아닌 곳들(outside the prison system)**에서 매장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 부류는 대기근 시기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당국의 고문 조사를 받다가 죽었거나, 구류 상태에서 사고나 질병,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한 경우들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기 대기근 시기에는 거리에 시체가 많이 널려있었는데, 관계당국에서 거리의 아사자 시체를 트럭으로 옮겨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5-10명 정도씩 집단 매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굶어 죽었거나 사망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체가 발견된 해당지역 경찰기관(안전부 또는 보안서)이 관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시체를 발견하면 주로 관할지역 경찰에 알렸고, 신고 받은 기관은 조직적으로 시체를 처리했다고 한다. 굶어 죽은 사람들은 대개 일반 공동묘지 구역 내 또는 주변에 판구덩이에 10명 정도까지 집단 매장되었다고 한다.

처형되었거나 구류 상태에서 고문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대체로 신속하게 지역 외곽의 야산으로 옮겨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달리 경찰기관이나 국가정보기관 건물 주변에 산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인근 산비탈에 매장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찰기관이나 국가정보기관 주변 산들은 일반주민들이 출입할 수 없는 제한구역인 경우가 많은데, 이 조사에 참여

한 탈북민 중 상당수는 그러한 제한구역들에도 매장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파악된 매장지들의 분포는 각 도시와 각급 행정구역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몇몇 여성들은 여러 지방으로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던 중 도시에서 10-20km 정도 떨어진 한 시골마을 야산에서 사람들의 발길 흔적을 따라 걷다가 매장지를 목격하였는데, 매장한지 얼마나 않은 것 같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sup>34</sup> 이 증언자들은 그 즈음 이 지역에서 공개처형이 집행되었고 같은 날 바로 시체를 묻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는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매장 시점이 얼마나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국가정보기관(보위부)과 경찰기관(안전부)에서 일했던 두 명과 도안전부 수감시설에 갇혔던 한 명의 증언자는 각각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매장지들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의 페이지들에서 제시하는 여러 종류의 지도는 조사참여자들이 제공한 위치 정보들에서 추려낸 몇 가지 특징들을 보여준다. 다만, 지도2와 지도3, 지도5에서는 북한 당국 등 연루자들이 위치를 역탐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위성사진 배경이미지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점 위치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와 측정 거리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지도1 - 각 도별 추정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현황**은 북한 각 도별 출신 인터뷰 참여자 수(차트5 참고)와 이들이 지목한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들의 위치 묶음<sup>35</sup> 현황을 각 도별로 보여준다. 조사의 현 단계에서 이러한 현황 지도는 각 도별 인터뷰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이들이 지목하는 추정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위치 묶음 개수도 대체로 늘어나는 감정적인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지금까지 종합한 47개의 위치 묶음을 중 대부분은 묶음을 풀어보면 조사참여자가 지목한 위치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4개의 위치 묶음은 2회 이상 맥락이 매우 비슷하고 위치상 근접하여 같은 곳으로 간주되는 지점을 묶어놓았다. 이러한 4개의 위치 묶음 가운데, 한 묶음에서는 한 명이 2개의 매우 근접한 지점을 지목하였고, 2개의

34. 공공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잇따른 식량난을 겪은 북한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장에서의 사적인 장사활동이 늘어왔다. 나라에서 지정 배치하는 직장에서는 생계에 필요한 보수를 조금 받거나 전혀 못 받기도 하지만, 직장과 조직생활 참여를 강하게 요구 받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요구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장사에 나서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비공식 경제는 많은 북한주민들의 주요한 생존수단이 되고 있다. Jihae Lee and George Swartz, “‘Jangmadang Generation’ at the Core of Change in NK,” Daily NK, July 6, 2015,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num=13323&catald=nk02501>.

35. “위치 묶음”的 정의는 도표4 참고.

위치 묶음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명씩 같은 곳으로 간주되는 지점들을 지목하였으며(이 중 하나인 지도2 참고), 마지막 한 묶음에서는 3명이 같은 곳으로 간주되는 지점들을 지목하였다 (지도3 참고). 여러 명의 증언자들이 교차 지목하는 위치 묶음의 개수는 앞으로 인터뷰를 계속 실시하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위치들의 신빙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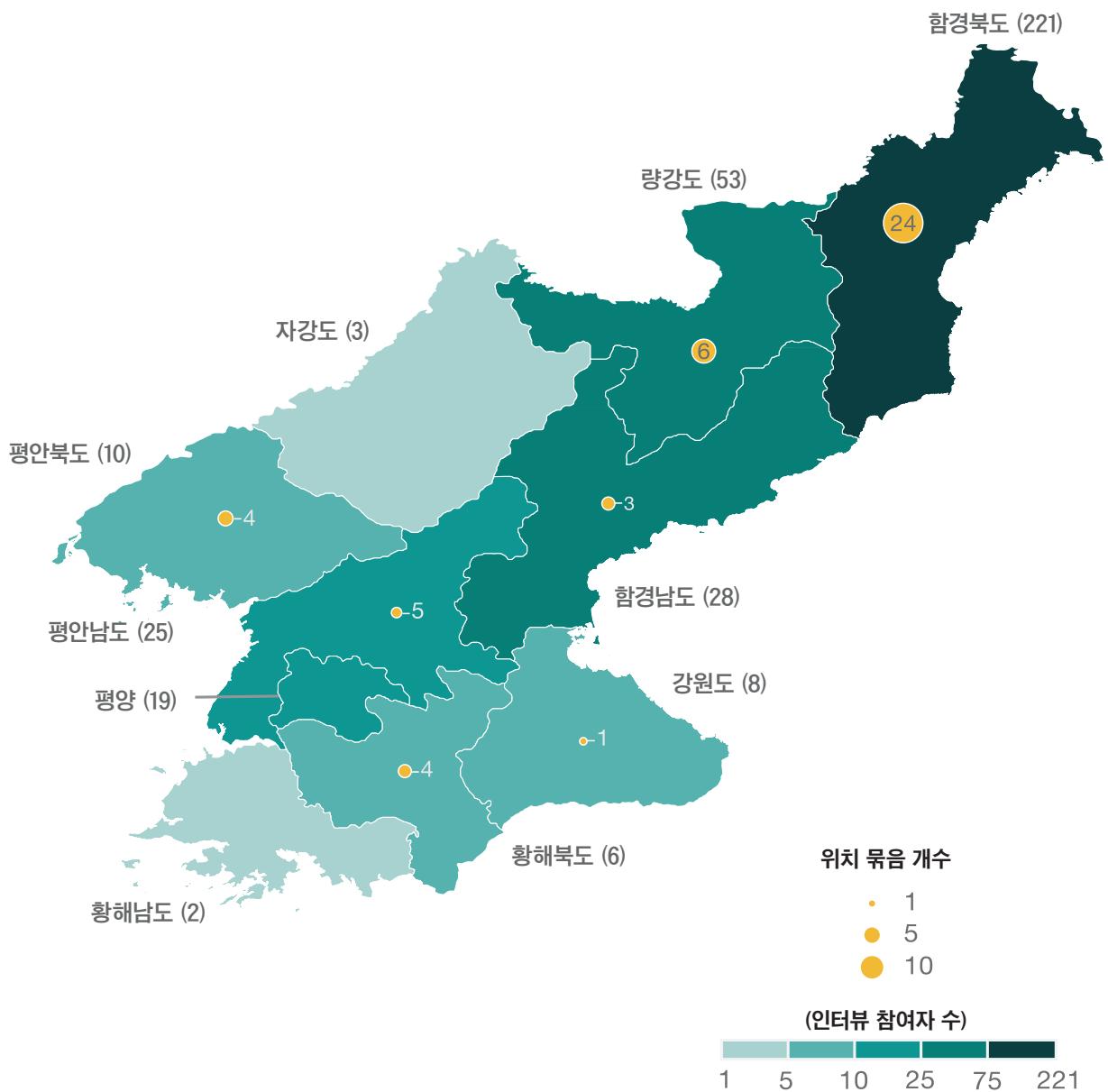
**지도2 - 살해장소 주변 추정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위치 묶음(예시)**는 조사참여자들이 지목한 살해장소들과 매장지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여준다. 다만, 이 지도에서 살해장소들은 위치 묶기를 실행하기 전 단계(*pre-consolidation*)의 단순 지목된 지점들을 모두 표시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sup>36</sup>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를 영역으로 표시한 폴리곤과 지점으로 표시한 점은 2명의 증언자가 교차 지목한 곳인데, 두 증언자 모두 이곳이 광산구역이라고 동일하게 설명하였다.

**지도3 - 추정 화장터 위치 묶음(예시)**는 같은 곳으로 간주되는 매우 근접한 3개의 지점을 3명이 지목하였음을 보여준다. 교화소 수감 중 사망자들의 시체를 소각하는 한 교화소와 연계된 화장터로 파악된 곳이다.

---

36. “위치 묶기 전 단계”의 개념은 도표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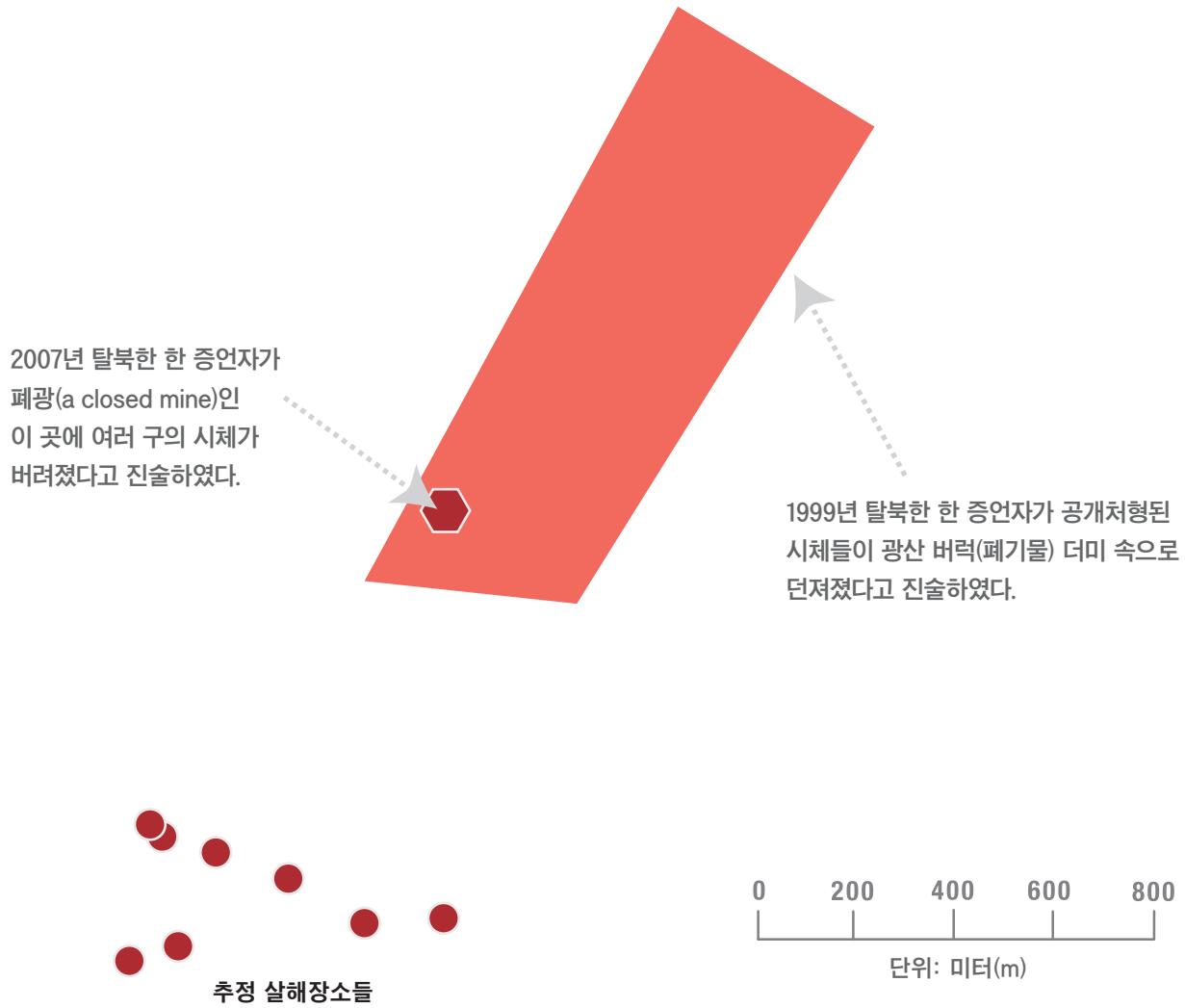
## 지도 1: 각 도별 추정 매장지 및 시체처리장소 현황 인터뷰 인원수 대비 수집된 정보(위치 묶음) 개수



각 도의 경계표시는 기본적으로 Global Administrative Areas (<http://www.gadm.org/>)의 GADM 2.8 데이터로 생성하였지만, 이 매핑 프로젝트에 부합하도록 가장 포괄적 단위의 최상급 행정구역을 10개(9개 도와 평양특별시)로 정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10개 행정구역 명칭의 영어 철자는 북한 조선중앙통계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조사 보고서 표기법을 채택하였다.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2009,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w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us%20report.pdf](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w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us%20repor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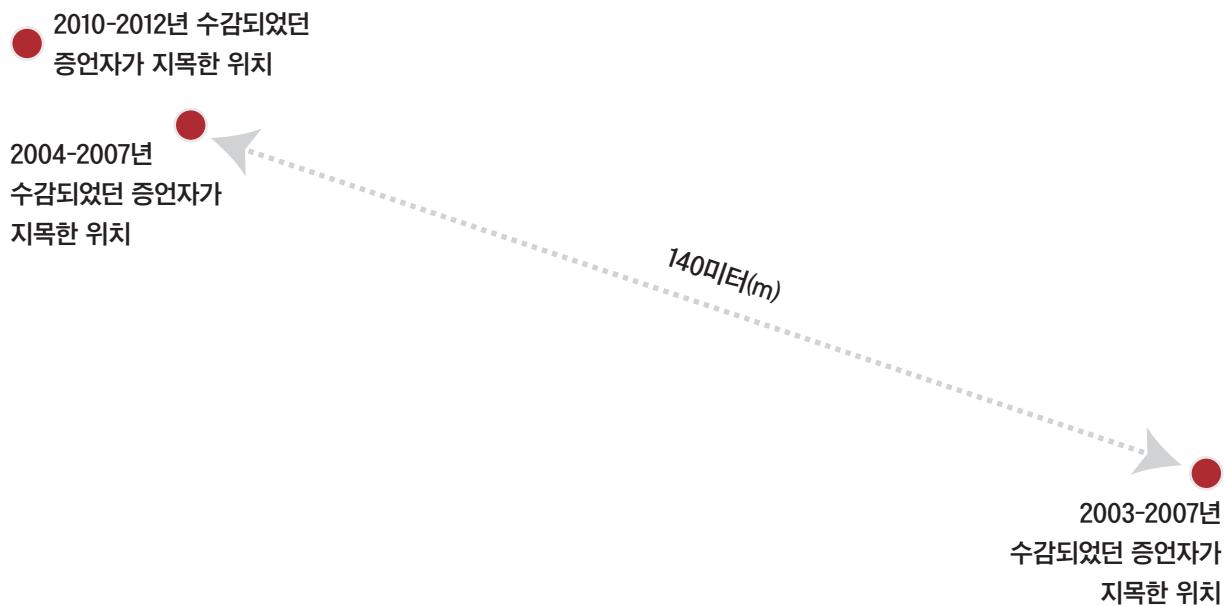
## 지도 2: 살해장소 주변 추정 매장지 위치 둑음 (예시)

영역으로 표시한 폴리곤과 그 안에 지점으로 표시한 점은 2명의 증언자가 교차 지목하였음을 보여준다. 2명의 증언자가 제공한 2개의 정보를 위치 분석 단계에서 1개의 위치 둑음으로 통합하였다. 이 위치 둑음으로부터 4km 반경 이내에서 48회 이상 여러 곳의 추정 살해장소들이 지목되었고, 지도의 왼쪽아래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점들은 매장지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파악된 살해장소이다. 매장지를 폴리곤 형태로 표시한 증언자는 이 영역 전체를 매장구역으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구역 안에 매장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지도 3: 추정 화장터 위치 묶음 (예시)

이 위치 묶음은 한 교화소 근처에 여러 구의 시체들을 불태우는 화장터로 지목된 세 지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점은 서로 다른 시기에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3명이 각각 하나씩 지목하였다. 3명의 증언자 모두 수감자들이 사망하면 교화소와 가까운 이 구역으로 시체들을 옮겨 불태운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세 번째 증언자는 이 곳을 자주 가보았는데, 시체를 옮기는 일을 종종 수감자들에게 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지도의 범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증언자는 시체들을 불태우기 전 까지 시체들을 임시로 쓸어두는 곳이라며 교화소 내의 창고 한 곳의 위치도 지목하였다.



## 살해장소

이 조사에서 파악된 살해장소의 대부분은 공개처형 집행 장소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사형이 인권유린으로 간주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 2항은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사형은 범죄 당시 현행법에 따르고 동시에 이 규약의 규정과 제노사이드(특정집단살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7</sup> 그러나 위의 규약 이행을 관리하는 유엔사무국위원회는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가장 중한 범죄”라는 표현은 대개 계획된 살인이나 살인 예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기 위해 의도된 가해 행위 등으로 제한되는 범죄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사형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1972년 마련되어 가장 최근으로는 2012년 개정된 북한 헌법은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사형의 적용을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 1987년 2월 북한 정부는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할 수 있는 죄목을 33개에서 5개로 줄인 바 있었다. 그러나 국제인권연맹(FIDH)은 북한의 형법과 실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중 4개는 정치적 죄목이고, 조항들이 매우 모호하게 쓰여 있어 사형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sup>38</sup> 국제인권연맹은 북한이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법률을 개정하고 수정보충하여 2012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형할 수 있는 죄목을 24개로 다시 확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최소한 9개는 사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이렇게 특정한 죄목들에 대해 법원이 다른 고려 없이 사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법은 여러 가지 인권기준을 위반한다:

37.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1981년 아무런 유보조항 없이 가입하였지만, 1997년 8월 이 규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규약에는 탈퇴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무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인 다른 유엔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탈퇴할 수 없음을 밝혔다.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6 December 196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9, 171쪽,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4&chapter=4&clang=\\_en#8](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4&chapter=4&clang=_en#8). 북한은 1989년부터 제노사이드(특정집단살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고, 1984년에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38.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In the Machinery of a Totalitarian Stat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2013), 18쪽, <https://www.fidh.org/IMG/pdf/en-report-northkorea-high-resolution.pdf>, 한국어 번역본은 “북한의 사형제도: 전체주의 국가기구” (국제인권연맹, 2013), <https://www.fidh.org/IMG/pdf/kr-report-high-rez.pdf>.

“설령 의도적 살인인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사형을 부과하게 하는 것은 죄의 무게를 낮출 수 있 을만한 정상도 참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는다.”<sup>39</sup> 또한, 형법부칙에는 여러 가지 애매모호 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이 자의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sup>40</sup>

게다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개적으로 초법적 처형, 악식 처형 또는 자의적 처형 을 집행하는 것도 규약 제6조와 제7조 위반일 수 있다. 많은 탈북민들이 증언하듯이 처형당하는 사람의 가 족을 비롯하여 사람들에게 처형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하는 것도 규약 제7조를 위반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sup>41</sup>

남한의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형법 조문을 분석하고 탈북민들을 인터뷰하여 반역죄, 마약 밀수·밀매죄, “무 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극히 무거운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비법적인 영업죄” 등 북한 형법상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대한 목록의 죄명을 연례 북한인권백서에 적시 하였다.<sup>42</sup> 남한 녹화물 시청·유포행위만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죄목들과 경합하여 사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직 불명확하지만, 통일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남한 녹화물 시청·유포행위를 죄목에 포함 한 사형 집행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하였다고 밝혔다.<sup>43</sup> 우리 조사의 한 부분으로 실시한 인터뷰들에 서는 남한 녹화물 시청·유포행위만을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몇몇 증언이 수집되었다.

다른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조사해온 것처럼 우리의 인터뷰 데이터도 공개처형이 가장 빈번하게 벌어진 시 기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대기근 기간과 대략 부합하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지역주민들을 모아두고 처형을 집행하여 당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주민 억지전술로 서 공개처형을 계속해오고 있다.<sup>44</sup>

39.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Note by the Secretary General”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ugust 9, 2012), 문단61,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GA67session.aspx>.

40.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In the Machinery of a Totalitarian State,” 19쪽.

41. “201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July 2016), 81쪽.

42. 앞의 보고서, 65쪽

43. 앞의 보고서, 69–71쪽.

44. Asher-Schapiro, Avi. 2017. “North Korea Has Publicly Executed 1,382 People Since 2000, Report Claims.” VICE News. <https://news.vice.com/article/north-korea-has-publicly-executed-1382-people-since-2000-report-claims>.

**정치범수용소(관리소)와 감옥(교화소)**에서 처형은 수감자들의 탈출 시도 의지를 꺾기 위한 공포심 조성과 위협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조사참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에서의 처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한 유형은 비공식적 처형인데, 이는 다른 수감자들의 눈에 띠지 않는 외딴 곳에서 처형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유형은 공식적 처형인데, 이는 다른 수감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처형되는 것을 뜻한다.

**감옥이 아닌 일반지역**에서의 공개처형은 강둑 근처, 강가 공터, 교량 근처, 공공 야외경기장, 시장, 지역 주변부 학교운동장, 산비탈 등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처형된 사람들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이 죄목으로 밝힌 혐의는 타인의 재물 절도, 공장기계 부속품 또는 전선 구리 절취·판매, 가축 절도·절취·판매(특히 국가재산으로 간주되는 소인 경우), 옥수수 및 쌀 등 농작물 절도, 살인(우발적 살인 포함), 인신매매(다른 사람의 탈북을 도운 경우, 중국남성과의 결혼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여성을 넘긴 경우), 남한 녹화물 유포, 조직적 성매매, 성폭력<sup>45</sup>, 마약밀매<sup>46</sup>, 패싸움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러 조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당국에서 한 무리의 혐의자들이 체포되면 혐의에 덧붙여 가족배경 또는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최종 공개처형 대상자로 뽑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sup>47</sup> 또한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새로운 포고령을 내릴 때마다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처형을 자주 집행했다고 조사참여자들은 덧붙였다.

당 관료나 국가 및 행정기관 간부들을 처형한 사례들에서는 횡령, 간첩죄, 국가재산 또는 물품의 사적 편취와 사치품 향유 등이 죄목으로 언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 당국은 다른 지역들에서 비슷한 지위의 관료나 간부들을 소집하여 사형집행 현장을 보게 하고 두려움을 갖도록 억지전술로 활용

45.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수감시설 관계자와 군인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흔히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불처벌 문제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문단318–19.

46. 북한에서는 오래 전부터 양귀비 유액에서 채취하는 아편과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합성마약인 메스암페타민류의 마약이 국내 소비와 불법 수출 용도로 오래 전부터 생산되어 왔다. Younghwan Lee, “Child Is King of the Country: NKHR Situation Report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North Korea” (Seoul: Life and Human Rights Books, January 2009), 117–32쪽.

47. 1950년대 후반 이래, 북한 정권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일가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하고 3대 계층 및 56개 부류의 성분으로 분류하여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통제를 유지하여 왔다. 통일연구원 2016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3대 계층은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 계급잔여분자로 분류되고, 3대 계층 밑에 세부적으로 56개의 부류로 분류해 놓았으며, 별도의 25개 성분으로도 구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38–41쪽. 다음의 보고서도 참고 Robert Collins,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7쪽, [https://www.hrnk.org/uploads/pdfs/HRNK\\_Songbun\\_Web.pdf](https://www.hrnk.org/uploads/pdfs/HRNK_Songbun_Web.pdf).

한다. 조사참여자들 중 3명은 각각 함경북도, 황해북도, 량강도에서 한 번에 10-15명 가량을 집단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이 중 량강도와 황해북도에서 벌어진 집단처형은 보위사령부가 집행했다고 설명하였다.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선 후 보위사령부라는 명칭은 보위국으로 바뀌었다.

우리 조사참여자들 중 몇몇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이 벌어지기 전에는 국가적 차원과 지방 차원에서도 교수형을 집행하였고, 장소는 주로 시장이었다. 그러나 2004년 뒤부터 교수형 집행을 중단했거나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잔인한 사형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국제적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sup>48</sup> 이 매핑 프로젝트에 참여한 탈북민 중 교수형 시기와 위치정보를 함께 제공한 경우는 총 30건이었는데, 이 중 2004년 후로 교수형은 한 건이 있었고 집행된 해는 2012년으로 기록되었다. 2005년 이후부터 총살은 가장 혼한 처형 방법이 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한 도시 출신의 조사참여자는 시 안전부 소속 안전원이 한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을 목격하였고, “북한에서는 어떤 죄목들에 대해서는 총알을 쓰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증언자가 관련정보를 제공한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혐의자를 때려죽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증언자는 그 지역에서 안전원으로 근무하던 여러 친척들로부터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설명하였다.

북한 간부 출신의 한 증언자는, 관료들이 간첩 혐의를 받으면 북한 형사사법제도상 수사-예심-기소-재판에 이르는 절차 중 예심 단계에서 심하게 맞다가 비밀리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북한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예심은 종종 국가보위성(전 국가안전보위부)이 진행하고, 재판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심문, 고문, 구금기간 연장과 강제 자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sup>49</sup> 이러한 살해 유형에서는 처형될 혐의자를 때려 죽이기 전에 은밀한 곳으로 끌고 가서 자신이 매장될 구덩이를 파도록 강제하기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유지하고 있는 사형 및 살해 방식에 관한 최근의 다른 보고들과도 부합한다.

**지도4 - 각 도별 추정 살해장소 현황**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차트5(도 단위 주요 거주지역)와 도표3(민감한 위치의 중분류와 소분류 현황)의 2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

48.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Effective.” Daily NK, January 26, 2005,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2100&num=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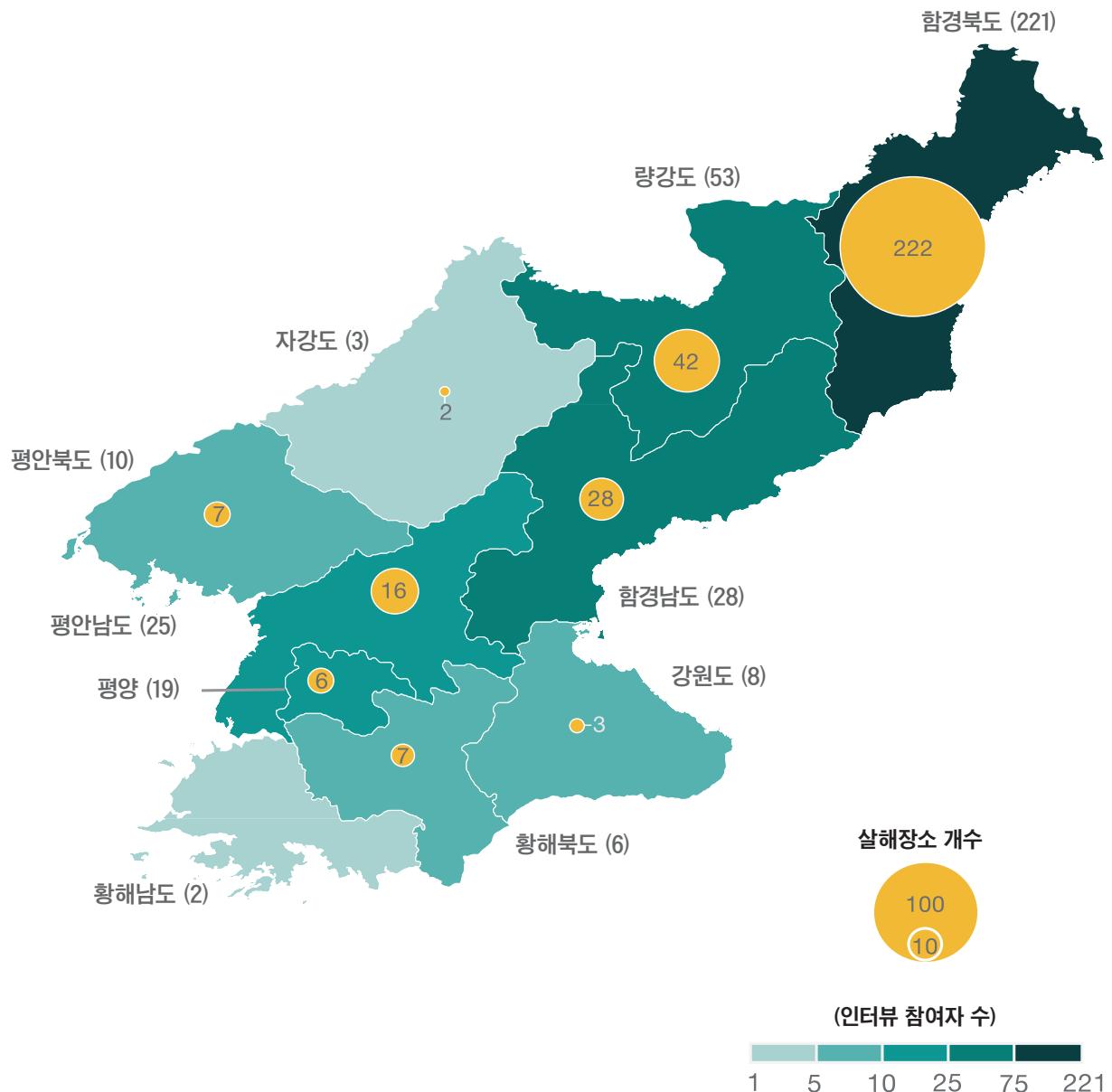
49. Tae-Ung Baik, “Nonjudicial Punishments of Political Offenses in North Korea—With a Focus on Kwanriso,”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64, no. 4 (December 1, 2016): 891–930쪽.

가 인터뷰한 조사참여자 전체를 도별로 구분하여 인터뷰 인원수와 파악된 살해장소의 개수를 각 도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만, 살해장소 개수에서는 교차지목되어 같은 위치로 볼 수 있는 곳들의 개수는 이 지도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치통합 전 개수의 의미는 도표3 참고). 이 조사의 현단계에서는 각 도별 인터뷰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각 도별로 파악되는 살해장소의 개수도 함께 증가하는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 5 - 물길 주변에 집중분포된 추정 살해장소(예시)**는 처형이 벌어진 곳으로 지목된 위치들이 강물이 흐르는 주변에 무리 지은 군락 형태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에 동일한 처형사건으로 조사참여자들이 교차 지목한 곳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표시된 지점들에 관한 인터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은 이 보고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기록된 데이터로 추출한 것인데, 드물게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진술하는 증언자도 있지만 특정연도나 연도범위, 월, 계절 등 증언자마다 시기를 기억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세분화해야 하는 기록단위가 기존의 기록체계와 꼭 맞지 않을 때마다 조사기록체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거듭해오고 있다.

#### 지도 4: 각 도별 추정 살해장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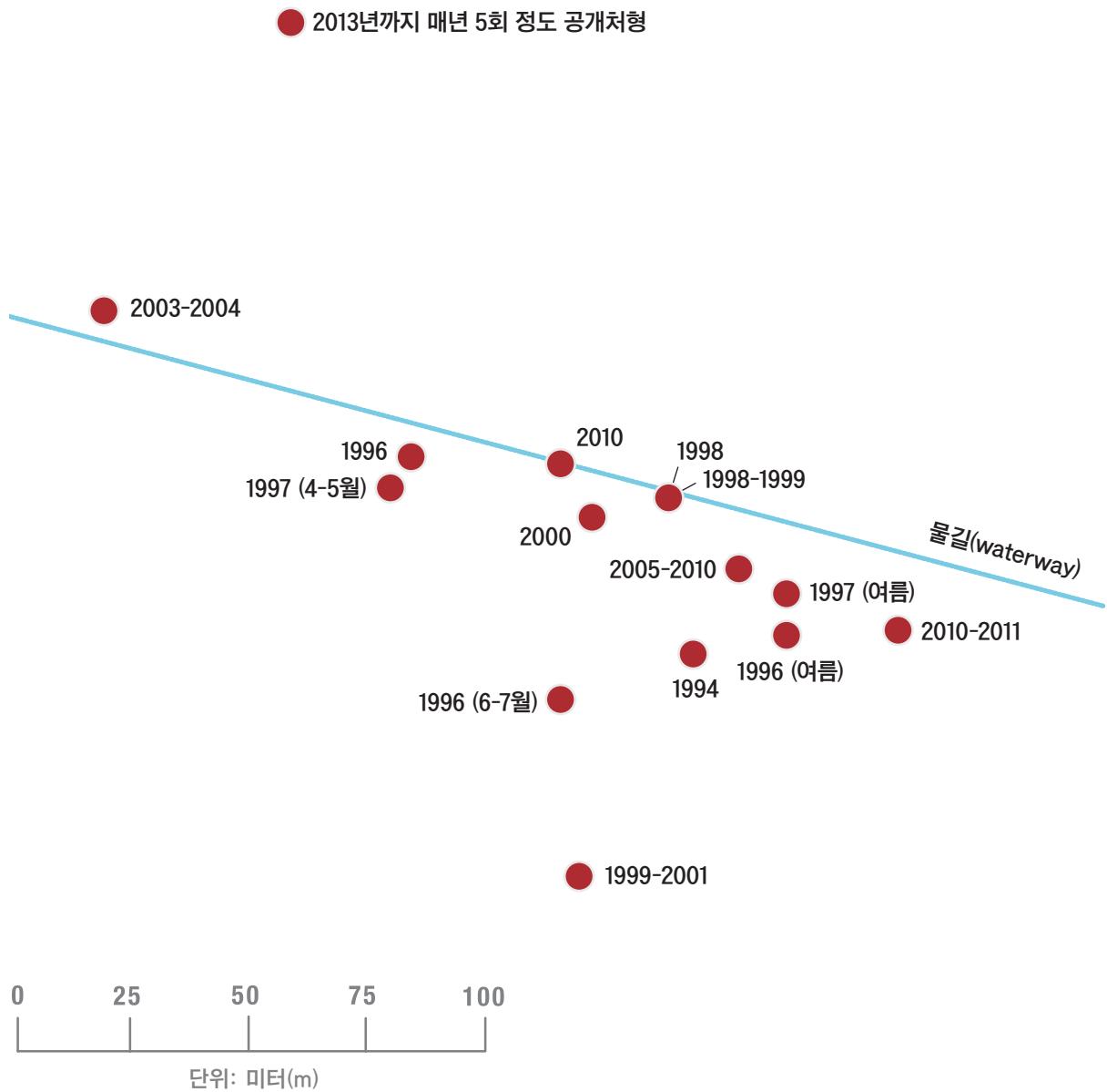
인터뷰 인원 대비 수집된 정보 (위치 묶기 전 개수)



각 도의 경계표시는 기본적으로 Global Administrative Areas (<http://www.gadm.org/>)의 GADM 2.8 데이터로 생성하였지만, 이 매핑 프로젝트에 부합하도록 가장 포괄적 단위의 최상급 행정구역을 10개(9개 도와 평양특별시)로 정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10개 행정구역 명칭의 영어 철자는 북한 조선중앙통계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조사 보고서 표기법을 채택하였다.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2009,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w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us%20report.pdf](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w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us%20report.pdf)).

## 지도 5: 물길 주변에 집중분포된 추정 살해장소 (예시)

이 지도에 보이는 범위에서는 15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공개처형 위치를 지목한 결과 불과 몇 백 미터 거리 내에 15개의 지점이 식별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 지도의 범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구역으로부터 2km 반경 이내에서 약 36회 정도 여러 곳의 살해장소들이 지목되었다. 각 지점마다 증언자들이 기억하는 공개처형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 시간적 범위 형태로 기록된 경우들은 해당증언자가 공개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그 지점에 벌어졌다고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시기를 확실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밝혔음을 뜻한다.



강의 수로가 표시된 바탕지도는 Geofabrik웹사이트를 통해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http://download.geofabrik.de/asia/north-korea.html>).

##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이 매핑 프로젝트에서는 인권유린 관련 기록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을만한 위치들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건들은 장래 사법절차가 진행되거나 북한 정권의 전체 존속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의 정확한 역사 기록화 작업에도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위치들에는 북한 전 지역의 각급 경찰기관과 국가정보기관 사무실, 각급 군부대, 각급 행정기관들의 위치들까지 포함된다. 북한에서 문서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특히 모든 주민들을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 계급잔여분자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성분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별 행적은 가족구성원들의 기록과 연계하여 관리되고, 특히 정치적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가족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좌제”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성분과 가족배경 분류에 기초한 차별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정치적 행적에 관한 면밀한 기록과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각 개인의 사망 경위가 자연사였는지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에 관한 기록도 포함된다. 북한 정권이 “정치적 범죄”로 처형되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일을 당하고 사망한 사람들의 기록을 유지하는 이유는 망자와 가까웠거나 관련된 적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적까지 들춰보고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철저한 주민감시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북한의 여러 각급 기관들에서 부당한 처형이나 공권력에 의한 살해 관련 상세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정문서의 가치는 체계적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을 시도해온 다른 나라들에서도 입증되어왔다. 과테말라도 그 중 하나이다. 단순 서류로 지나칠 수 있었던 행정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경찰관 승진인사 기록 문서가 미해결 상태였던 한 학생운동 리더의 실종사건을 푸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 납치 지시 문건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학생 리더를 처리한 공로로 경찰관들이 승진한 기록이 확보되어 이 가해자들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다. 또한 2013년에 이르러서는 전 국가경찰총장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는 데에도 이 행정문서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서기록들은 미래의 책임규명 과정에 불가결한 부분이 될 것이다.<sup>50</sup>

문서 형태의 유효한 증거물이 보관되어 있을만한 장소들 중 일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곳

50. “Solving for X: How Numbers Matter in the Fight for Human Rights,” <https://vimeo.com/52305779>; Kate Doyle, “Guatemalan Court Convicts National Police Chief,”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September 24, 2013, <http://nsarchive.gwu.edu/NSAEBB/NSAEBB440/>.

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위성사진 지도로 비교적 쉽게 식별된다.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사무실들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조직적, 구조적으로 잘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우리는 이런 곳들에 보관된 문서들이 정확히 어떤 종류이고, 분량은 얼마나 되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중 8명이 이미 사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손으로 작성한 사망확인서와 진료기록부 등의 문서를 피해가족들과 일본 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와 피해가족들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 당국이 조작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는데, 그러한 문서들로부터 북한에 어떤 종류의 문서기록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지 몇 가지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sup>51</sup> 우리 조사에 참여한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 경험자 한 명은 수용소에서 비밀 처형된 수감자 명단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한 해에만 1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공개처형 방식이 아닌 비공개로 처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증언자는 자신이 수용소에 있던 동안 비밀 또는 비공개 처형이 가장 많았던 해를 1999년으로 꼽았다. 또한 처형장소에서 탄피를 줍고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은 재소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증언자는 어릴 때부터 수용소에서 자라면서 몇몇 관계자들과 개인적 친분이 자연스럽게 쌓였고, 이러한 이례적 관계 덕분에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을 볼 기회가 있었으며, 그 문건으로 처형된 인원수와 그들의 직업이나 직급 같은 신상정보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증언자는 수용소를 관할하는 보위부와 이 지역의 안전부까지 최소한 2개의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문건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sup>52</sup>

북한체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성격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권위주의 정권들의 사례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슈타지 기록물은 전환기 이후의 여러 재판과 진실규명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위치들을 미리 파악해두는 까닭은 훗날 기회가 올 때 증거가 될만한 문서들을 충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소개한 증언에서 수용소 재소자들이 처형현장의 탄피를 수거하는 데에 동원되었다는 대목은 북한 당국이 단순한 절차로서건 다른 이유에서건 처형 현장에 남을만한 증거물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멸해왔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에 전환기가 도래하면 우선 기록문서들이 사라지거나 인멸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우리는 앞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북한 정권이 공

51.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Headquarters for the Abduction Issue, Government of Japan, <http://www.rachi.go.jp/en/mondaiten/index.html>.

52. 한 명의 증언자로부터 나오는 정보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을 인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권력에 의한 살해 증거를 처리하는 데에 얼마만큼 민감한 것인지도 가늠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지도 6**은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량강도 혜산시를 보여준다. 이 지도는 혜산시에 존재하는 도급, 시급, 동급 등 각급 국가정보기관(보위부), 경찰기관(안전부), 구류시설, 군부대와 같이 인권유린에 관계된 중요한 문서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을만한 선별된 위치들을 담고 있다. 압록강의 북쪽(이 지도에서는 왼쪽)이 중국이고, 남쪽(이 지도에서는 오른쪽)이 북한 지역이다. 이 지도에 표시한 모든 지점은 각각 최소 2명 이상의 복수의 조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곳들이다.

## 지도 6: 량강도 혜산시 내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예시)



IMAGERY VIA GOOGLE EARTH

Image © 2017 CNES / Airbus

## 탈북민들의 조사 참여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인권침해로 영향을 받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의하는 것은, 이들이 가해자 책임규명에 관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이후에 마련될 메커니즘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정당성과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sup>53</sup>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매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탈북민들에게 장래에 북한의 전환이 한반도 차원의 대전환으로 전개될 경우, 가해자 책임규명, 진실규명, 피해배상 등 전환기 정의의 핵심주제들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을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왔다. 최근에 유엔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이 “가장 심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울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sup>54</sup> 우리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구상하면서부터 탈북민들과의 더 많은 협력을 도모해왔는데, 이러한 접근은 지금처럼 전환기 정의 접근법을 한반도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초기단계에서 정보수집과 인식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북한 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모을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봄으로써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유익한 첫 통찰을 얻을 수 있다.<sup>55</sup> 1년 넘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모은 탈북민들의 응답과 분석 결과는 이후에 별도의 보고서로 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중 몇 가지 세트문항들에 대한 응답결과는 우리가 이 매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와 데이터의 미래 활용 방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사 방법과 결과 일부를 소개한다.<sup>56</sup>

53. “Report of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문단 20.

54. 앞의 보고서, 문단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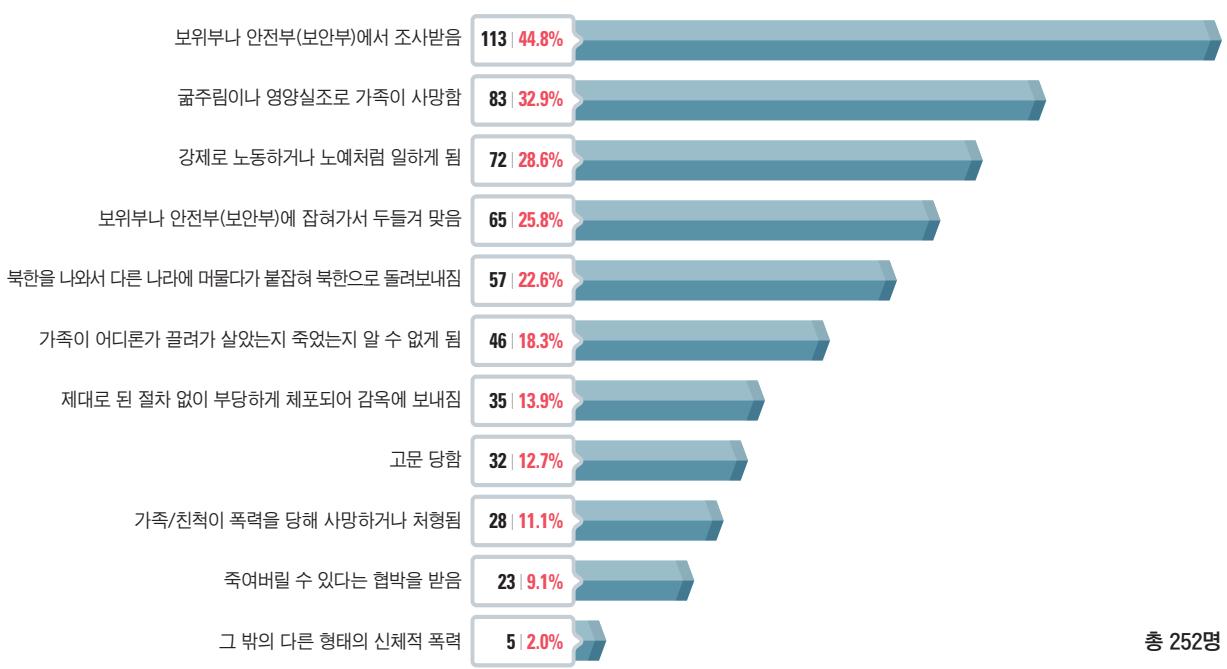
55. 유엔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이 나라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력하거나 주민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이 나라를 떠난 사람들과의 협력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앞의 보고서, 문단 26.

56. 여론조사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사무국 공간 내에서 서면으로 진행되며, 조사참여자들은 여론조사 응답을 먼저 마친 뒤에 매핑조사에 참여한다. 여론조사와 매핑조사는 조사목적과 방법, 활용계획 등이 서로 다른 조사이므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참여자로부터 별도의 고지된 승낙(informed consent)을 받는다. 다만, 이 여론조사는 매핑조사와 병행하여 순서상 먼저 진행되는 조사이고, 기본적으로 매핑조사 참여자를 모으는 방법이 눈덩이표본추출(snowballing)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문참여자들도 무작위적 표본(random sample)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본의 편향성이 잠재되어 있고,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riables)을 확인하기 위한 정확도 검증(accuracy tests)도 제한된다.

우리는 설문참여자들에게 북한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다. 이러한 질문은 “피해(victimhood)”를 해석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하다. 우리는 피해의 개념에 관한 연구와 실천적 적용이 광범위한 학문분야들에서 전개되고 있고, 전환기 정의 접근법을 적용할 때에도 특수하고 맥락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매우 유의하고 있다.<sup>57</sup>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북한사회의 면면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 “가해자”, “증인”的 개념을 타당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당한 개개인과 그룹들이 “피해자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치화는, 가해자 책임규명과 피해 배상 및 회복을 위한 조치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환기 정의의 실현 과정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방식까지 중요하게 좌우한다.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른 사람들을

#### 차트 6: 북한에서의 인권유린 피해 경험

북한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은 신체적 폭력 중에서 어떤 것을 겪었습니까? (복수응답)



<sup>57.</sup> Kieran McEvoy and Kirsten McConnachie, “Victimology in Transitional Justice: Victimhood, Innocence and Hierarchy,”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9, no. 5 (September 1, 2012): 527–38쪽; Kieran McEvoy and Kirsten McConnachie, “Victims and Transitional Justice: Voice, Agency and Blame,” Social and Legal Studies 22, no. 4 (2013): 489–513쪽.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speaking for others)”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실질적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하며, 이는 전환기 정의 연구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제들 중 하나이다.<sup>58</sup> 한반도의 맥락에서는 인권범죄 피해가 어떤 것인지 지속적이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성을 유념하여, 우리의 설문조사는 폭력 경험을 묻는 기초적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 질문에서는 21%만 북한에서 살면서 폭력을 당한 적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sup>59</sup> 약 응답자 중 28%는 탈북한 후 북한으로 송환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sup>60</sup> 위 질문에 대한 응답 구성비가 전체 북한주민들의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는 북한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 다만, 위 차트는 이 조사에 참여한 표본그룹에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피해자들”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임을 보여준다.

### 매장지 유해 발굴

일부 문항들에서는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해 발굴 필요 여부에 대한 탈북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아래 차트가 보여주듯이 272명의 응답자들 중 79.41%가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에서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없었지만, 나이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해 발굴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게다가 남한 정착 후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10년 이상인 응답자들이 유해 발굴에 더욱 강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북한에서 폭력을 당해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 찬성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는 이들이 책임규명, 진실규명, 피해가족 회복 지원 등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해 발굴이 필요

58. Tshepo Madlingozi, “On Transitional Justice Entrepreneurs and the Production of Victims,”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2, no. 2 (2010): 2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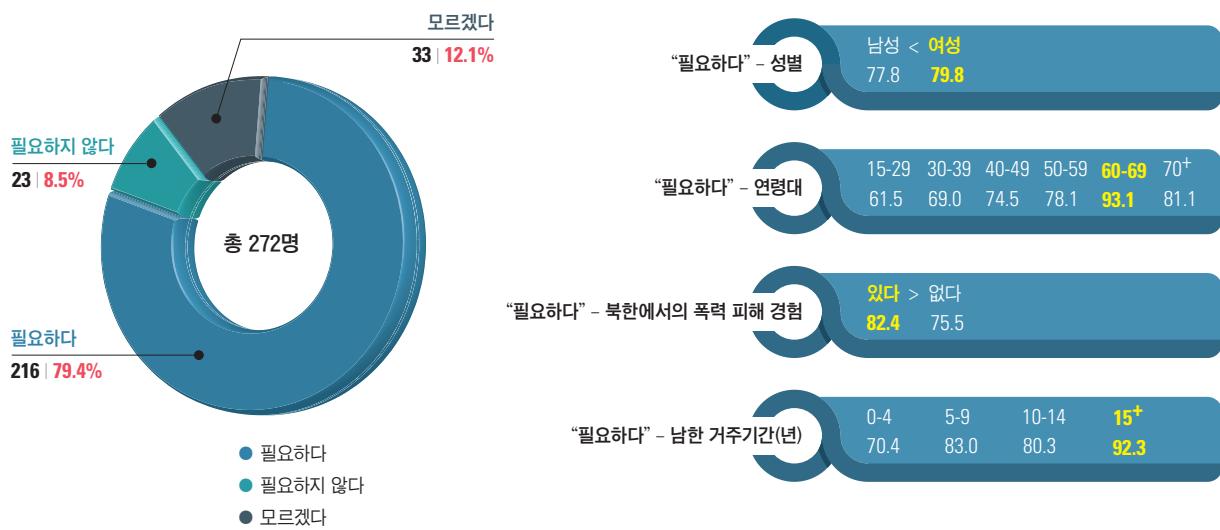
59. 252명 중 53명. 매핑 프로젝트의 인터뷰 참가자들 중 20명이 이 설문항목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60. 252명 중 57명. 중국은 북한과 1986년 체결한 ‘변경 지역의 국가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 의정서’와 1960년의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체포한 북한사람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킨다. “Perilous Journeys,” 2쪽. 송환된 사람들 중에는 중국에서 개인장사를 하다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국경을 건넜지만, 자발적으로 귀환하기 전에 체포·송환된 사람들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들은 소수였는데, 피해유가족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또는 유해 발굴보다는 경제발전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것 같아서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 차트 7: 인권유린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 필요성

북한이 크게 바뀌는 전환이 일어난 후에는, 그동안 인권유린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시체가 집단적으로 묻힌 곳들을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는(찾아서 파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차트 8: 유해 발굴이 필요한 이유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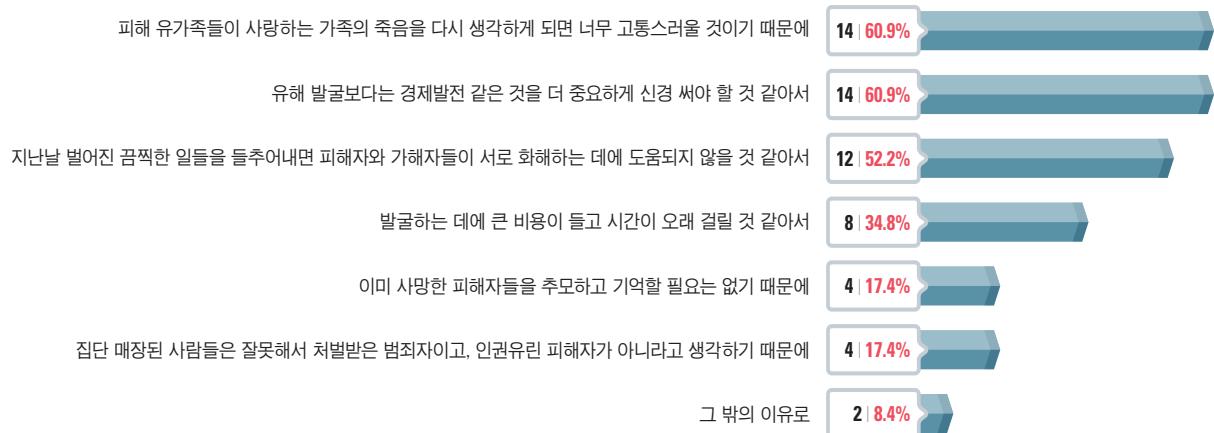
응답 216명 (총 272명 중)



## 차트 9: 유해 발굴이 불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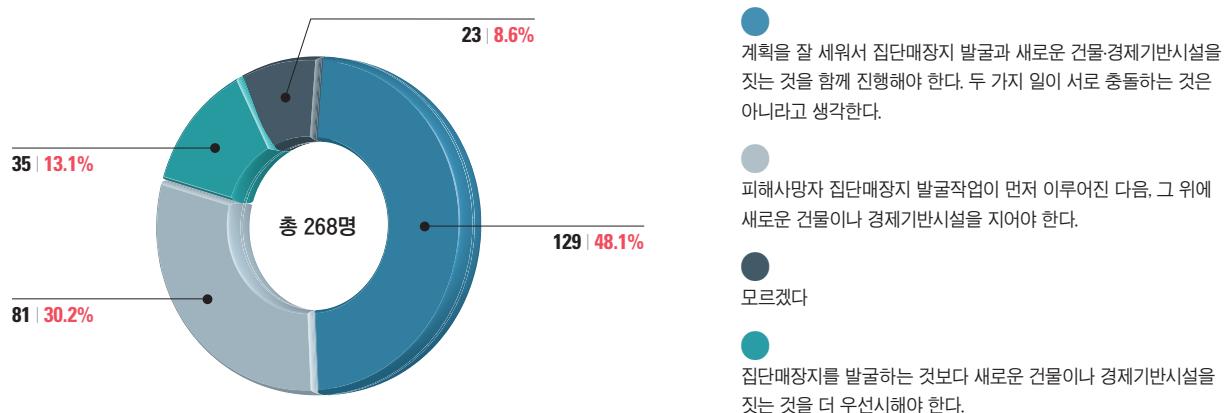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응답 23명 (총 272명 중)



## 차트 10: 북한의 전환기에 고려되어야 할 매장지 처리 우선순위

북한이 크게 바뀌는 전환이 일어난 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다음 중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유린 피해사망자 매장지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구한 교훈들을 토대로, 이 조사에서는 북한에 전환기가 도래한다면 유해 발굴과 경제기반시설 건설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다음 차트는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두 가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는 유해 발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응답결과들과 종합해보면,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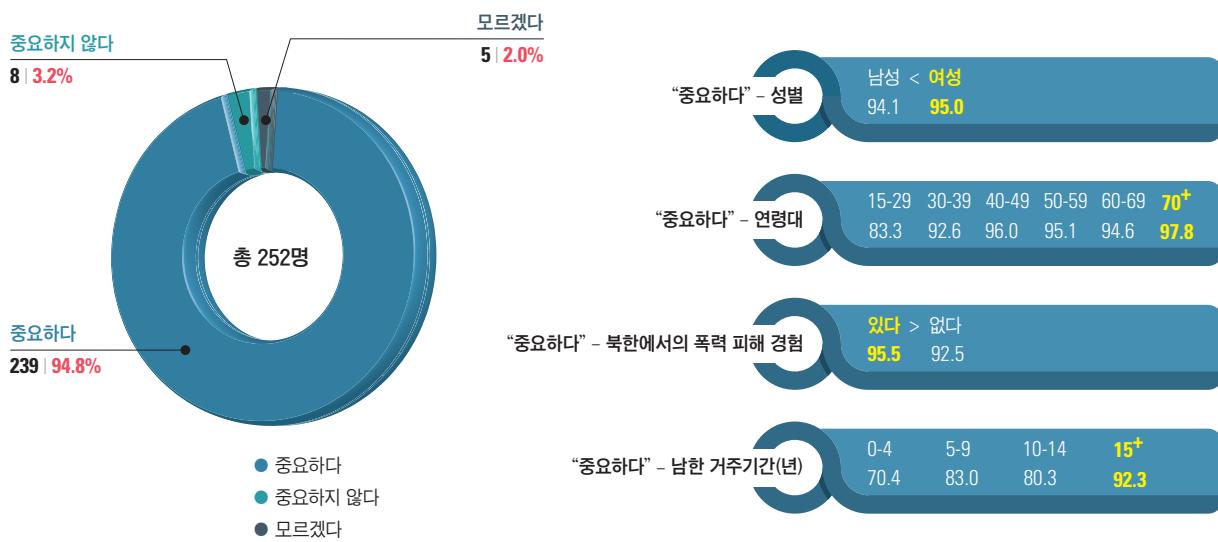
지 등의 매핑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조사의 전반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장래에 기회가 올 때 신속하게 발굴작업을 전개하려면 앞선 준비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책임규명

이 조사는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에 관하여 탈북민들의 관점은 어떤지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첫 여론조사이기도 하다. 전환기 정의에 관하여 논의할 때 “책임규명”이라는 용어는 인권침해 이 벌어진 곳에 주로 법적 처방을 적용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사법적 조치가 체계적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유효수단인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사법조치만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확신에서 전환기 정의 접근법이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다. 유엔은 전환기 정의가 무엇인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전환기에 효과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간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61</sup>

차트 11: 가해자 기소와 처벌 필요성

인권유린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검찰소에 고발되고 재판소에서 처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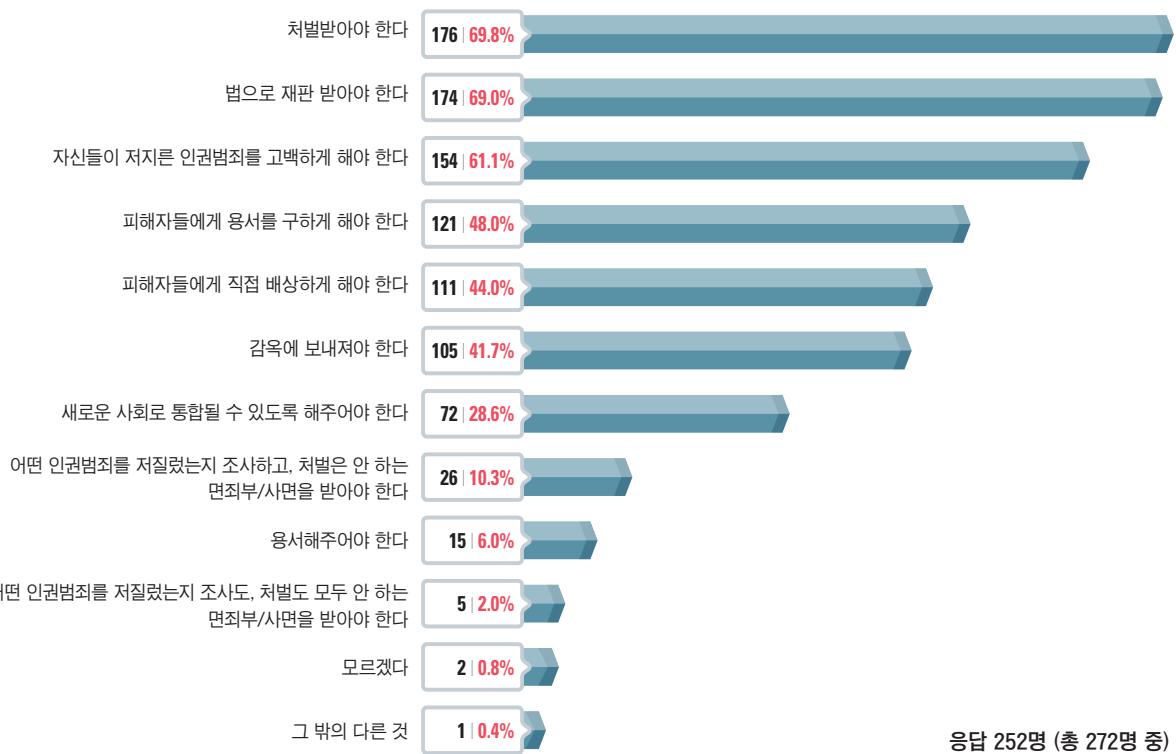
61. United Nations,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A Backgrounder” (United Nations, February 20, 2008), [http://www.un.org/en/peacebuilding/pdf/doc\\_wgll/justice\\_times\\_transition/26\\_02\\_2008\\_background\\_note.pdf](http://www.un.org/en/peacebuilding/pdf/doc_wgll/justice_times_transition/26_02_2008_background_note.pdf).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한국어 번역본은 “전환기 정의란 무엇인가?: 배경 설명” (2015년 6월 10일), <https://www.tjwg.org/data/media/20160416220439.pdf>.

북한사회의 맥락에 부합할 수 있는 책임규명 수단과 전환기 정의 실현 과정을 구상하려면, 피해를 당한 공동체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야 하고, 저마다 다른 책임규명 메커니즘들의 각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성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는 탈북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된 책임규명 메커니즘들 중 몇 가지 주요한 유형들에 관심을 갖도록 촉진하고 있다. 차트11은 설문참여자들이 북한인권문제의 가해자들에게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분류범주의 응답자들이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북한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남한 정착 후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다만, 나이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 결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책임규명을 선호하는 비율이 10-20대보다 14% 이상 높은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 차트 12: 가해자에 대한 조치방법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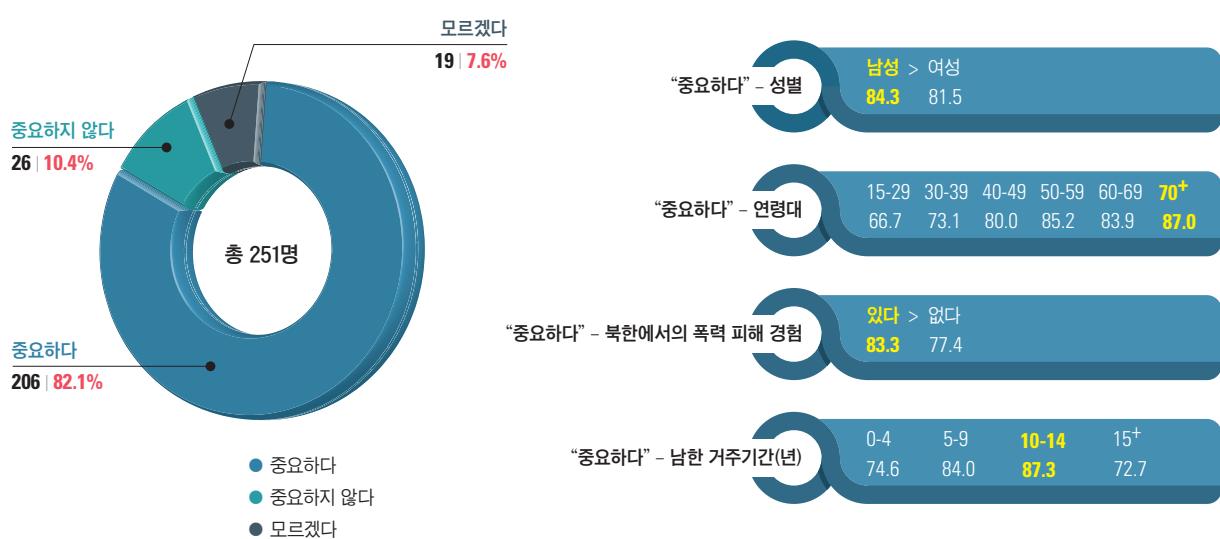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처벌 성격의 조치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게 하는 회복적 조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죄를 사면하거나 용서하는 조치들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잠재적으로 가해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인구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정권범죄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기소하여야 할 지에 관한 문제는 물론이고,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 을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매핑 프로젝트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북한체제 하에서 벌어져온 인권범죄의 본질을 밝히고, 조사참여자들이 제공하는 구체적 정보들로 특정된 가해자들은 우선 기소하는 데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사면 조치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탈북민들은 처벌 성격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중요하게 바라고 있다.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접근법을 다방면으로 구상하더라도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의견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피해 배상

이 매핑 프로젝트와 관련된 마지막 설문 주제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배상 필요성을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차트 13: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필요성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실과 고통에 대해 돈으로 배상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82%는 배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미래에 관련 정책이 마련된다면 배상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고 유가족을 찾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매핑 프로젝트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뒷받침한다.

인권유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높아졌고, 북한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밝힌 응답자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시각은 현재 북한 내에서 살고 있는 일반대중의 견해와 다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탈북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는 피해자들을 위한 회복 지원정책 방향을 잠정적으로 구상해보는 데에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탈북민들을 북한실상을 중언하는 단순한 정보제공자 역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탈북민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미래의 전환기 정의 정책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탐색하고 있다.

## 중간 결론과 정책적 함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 매핑 프로젝트로 북한 내 인권유린 피해사망자 매장지와 시체처리장소,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위치들을 일부 파악하였다. 집단매장지로 추정되는 다른 얼마간의 장소들도 인지하였지만,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신빙성 높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목표이다. 이 조사에서 탈북민들을 인터뷰하여 증언과 정보를 모으고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왔고, 우리가 구축해온 조사기록 시스템은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 내에서도 정보 상호간 교차참조(cross-referencing)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NGO들과 전환기 정의의 실현에 힘써온 경험 많은 실천가들과 교신하고 만나며 나눈 이야기와 경험사례들은 이러한 조사기록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해주었다.

우리는 수집하는 데이터를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지도로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민감한 장소들의 위치까지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미래를 위해 남아있어야 할 장소들을 북한 정권이 훼손하려고 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그렇다. 그 대신 우리의 전략적 구상에는, 유엔과 공인된 수사기관 같은 특정한 기구나 주요기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우리의 애드보커시 방향에 부합하거나, 공식적 조사나 사법적 수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에는 정보와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는, 중요한 장소들을 훼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이 조사의 본질적 측면과 파악된 위치들의 현황을 최신화한 지도 이미지들을 대중과 공유할 것이다.

지난 2년은 기술과 방법 모두에서 많은 난관들에 직면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북한인권조사 영역에 새로운 조사기록방법을 개척하는 시도인데다가 현장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제약까지 있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터를 수시로 점검하고 데이터 구조를 거듭 개선하여 왔다.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장소들을 탈북민들과 함께 찾아내는 데에도 때때로 상당한 난관이 있었다. 저마다 트라우마나 고통으로 영향을 받은 기억에 의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인터뷰마다 매장 시기, 매장 또는 처형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 처형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수와 신원 정보 등 세부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오

랜 기간을 요하는 조사의 초기단계에서 지금까지 인터뷰한 조사표본이 작은 편임을 감안하면, 우리는 조사가 진전될수록 데이터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비교적 신생 단체로서 우리의 활동은 더 긴 역사를 가진 곳들에 비해 세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첫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모으고 무엇을 하는지 더 널리 알려진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시작한 일들이 개척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정책 관련성은 분명하다. 매핑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권유린 사건들에 관한 정보를 위치 중심 데이터로 시각화하며, 탈북민 사회의 여론을 새로운 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이 그러한 예들이다.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는 유엔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의 요청에 따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의견서에 포함하여 이미 제공하였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는 새로이 추진하는 일들을 도우며 상호협력하고 있다. 또한 유엔 기구와 조직, 각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주도해온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수시로 협력하여 왔는데, 최근 우리는 북한의 납치범죄와 실종문제 등에 더 전략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사건별 프로파일링(profiling)과 북한을 상대로 소송도 시도할 수 있도록 실종자 데이터 수집·관리 시민사회 중앙기록보존소 구축 계획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남한 정부기관들로부터 조사기록방법에 관한 자문과 연구참여 요청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팀 구성원들은 북한과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와 세미나, 심포지엄에 자주 참여하여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전환기 정의 접근법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촉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탈북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고 이들과 협력함으로써 오랫동안 “수동적” 정보제공자로 머물러온 탈북민들이 “권리 주체자들”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시각화와 관련해서는, 더 진전되고 상세한 북한지도를 계속 구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위치들을 법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위치 매핑과 유해 발굴 절차뿐만 아니라 원격탐지(remote sensing) 분야 전문가들과도 이어지는 몇 개의 연결고리들을 만들었다. 또한 분쟁이나 권위주의 체제를 겪었거나 계속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상당한 기술적, 법적, 역사적 활동경험을 쌓은 여러 기관·단체, 전문가들이 우리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집단매장지를 직접 매핑하고 있는 몇몇 그룹들도 우리의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포함되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7년 7월말 법의학 분석과 국제형사절차에서의 법적 적용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서

울로 초청한다. 우리가 초청한 국제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지역으로 접근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고 신속하게 핵심 현장들을 조사하고자 할 때 유용할만한 발전된 기술과 방법을 북한인권 조사기록 그룹들에게 소개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북한 내 인권범죄 현장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사법절차의 실행과 피해 배상, 추모 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할지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조사기록과 애드보커시 활동 계획

앞으로의 과제와 희망하는 활동 확대방향들은 다음과 같다.

### 보충자료를 활용한 교차확인 (타 기관들의 조사보고서와 언론보도)

북한 내부로부터 나오는 정보들과 타 조사그룹들이 파악한 매장지나 우리가 관심을 두는 종류의 장소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후속분석에 기초한 인터뷰 대상자 특정 모집

지금까지 파악해온 곳들 중 집단매장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들이 위치한 지역들에 거주했거나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더 찾고자 한다. 특히 앞선 인터뷰 참여자들이 교차 지목한 곳들을 위주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장소들에 관한 분석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타 NGO들과의 협력 확대

우리는 그동안 다른 인권조사 및 애드보커시 그룹들과 국내적, 국제적으로 확대해온 협력활동 기반을 활용하여 남한 내 NGO들과의 협력폭도 넓히고자 한다. 해외로 확대되고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방법들도 면밀히 모색하고 있다. 2017년 7월 25-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증거 수집: 정보기술과 법과학을 활용한 인권조사기록” 국제회의와 실무워크숍도 이러한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 혁신기술의 활용 탐색

지금은 비록 우리가 파악해나가고 있는 북한 내 위치들을 현장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집단매장지들에서 나타나는 지리적·지형적 경향성을 토대로 숨겨진 매장지들의 위치를 찾는 원격탐지 기술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국제실종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ICMP) 등 기관 활동과 미국 테네시대학교의 “시체 농장(Body Farm)”, 영국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칼리지의 법의 학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 등의 프로젝트들에 적용되고 있다.<sup>62</sup> 집단매장지를 찾는 데에 원격탐지 기술을 적용하는 전제(premise)는 누군가를 살해하고 매장하는 경우, 시체를 묻을 위치를 정하는 데에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맥락 특정 분류법(context-

specific criteria)을 고안하여 추정 위치 분석에 사용한다.<sup>63</sup>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 보스니아에서 협동 연구를 진행한 위성사진 전문가, 지질학 전문가, 법의인류학자들은 조사 지역의 여러 집단매장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특징과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sup>64</sup> 이들이 얻은 통찰은 현장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의 경우처럼 원격탐지 기법이 특히 도움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조사여건들에도 응용해볼 만하다. 더 최근으로 테네시대학교의 시체농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에이미 먼도프(Amy Mundorff) 교수는 은폐된 매장지를 탐지하는 데에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technology, LiDAR) 센싱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sup>65</sup> 이 방법은 현장을 위성사진이나 다른 원격탐지 수단으로 파악해둔 위치들을 파헤치거나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위치들을 가해자 측에서 추적하여 현장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할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이렇듯 진화하는 기술들을 이 매팽 프로젝트에 응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앞으로 방향이다.

### 계속된 조사연구를 통한 북한의 전환기 대비 기여

한반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적 성격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sup>66</sup> 북한의 미래에 관한 최근까지의 논의 대부분은 북한 체제붕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역내질서 전망, 남한과 미국 등 인접국들의 군사, 외교, 경제, 안보 전략 설정방향 등에 관해 이루어져왔다.<sup>67</sup> 게다가 미래 시나리오 구상은 한반도 통일 상황을 가정하여 논의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통일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절차들을 실행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게 인정하지만, 북한과 남한 모두에서 또는 어느 한 쪽에서만 제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 전개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범죄들에 대하여 사법적 정의를 이루는 데에는 많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총체적 차원의 전환기 정의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적, 비사법적 차원 모두에서 다

62. “ICMP Finds Improved Methods for Locating Mass Graves,” <https://www.icmp.int/press-releases/icmp-finds-improved-methods-for-locating-mass-graves/>; <http://fac.utk.edu/>; <http://www.forensic-architecture.org/>.

63. James Walker, “Remote Sensing and Mass Graves Detection 101,” Lemming Cliff, February 27, 2017, <https://medium.com/lemming-cliff/remote-sensing-and-mass-graves-detection-101-cff939ad9d82>.

64. 보스니아 지역에서 나타난 특징들로는 매장지들이 강의 계곡, 초원 또는 농지의 가장자리, 도로에서 100미터 거리 이내, 도로변으로부터 매장 지점까지의 완만한 경사도, 우거진 잡초와 초목으로 뒤덮인 곳들인 경향성이 있었다. 토양 성분분석 방법도 “연구자들이 집단매장지의 정확한 위치를 지목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경향성을 보였다.” “ICMP Finds Improved Methods for Locating Mass Graves.”

65. “Welcome to the Body Farm,” Mental Floss, May 14, 2014, <http://mentalfloss.com/article/56640/welcome-body-farm>.

66. Baek, Collins, and Kim, “Transitional Justice in Post-Unification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67. 앞의 논문, 11쪽.

양하고 상호보완적인 메커니즘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인권침해들이 있었고, 시간적 범위가 얼마나 되며,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조사는 국내외 다른 기관들과 단체들의 활동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서 앞으로의 국제협력 방향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정부상을 그려보는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는 진실규명과 사법정의 실현, 피해 배상과 재활, 사법제도와 치안기구 개혁, 화해 구축 등 각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메커니즘들 사이의 기능적 상호보완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독재, 무력분쟁, 대규모 인권범죄로 점철된 과거의 유산을 해결하려고 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시적 또는 점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공고히 하고, 국민적 화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전환기 정의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은 서막에 해당한다. 우리는 더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우리가 매핑하는 위치들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들을 계속 찾을 것이다. 우리는 전환기가 실제로 도래하기 전에 인권범죄가 벌어진 장소들을 파악하고 정밀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의 경험하였듯이 사전 준비와 조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권범죄를 입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장소들이 취재기자, 경찰, 군인,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지주민들에 의해 사라지거나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sup>68</sup> 특히 가해자들의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해들이 묻힌 집단매장지일 경우, 해당장소의 온전성을 보존하지 못할 경우 처벌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질 위험성이 커진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 매핑 프로젝트를 통해 중요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집단매장지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들을 지도의 형태로 기록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의 유해를 발굴할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거나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들이다. 이는 훈련된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부단히 찾고 우리가 도모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한다. 마침내 기회가 열릴 때, 중요한 장소들을 지켜내고 신속하게 현장조사가 전개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나가기 위해서이다.

68. “Mass Graves of Yazidis Killed by the Islamic State Organization or Local Affiliates On or After August 3, 2014” (Yazda: Global Yazidi Organization, January 28, 2016), <http://www.yazda.org/wp-content/uploads/2016/01/Yazda-Report-on-Mass-Graves-Jan-28-2016.pdf>. 북한과 남한지역 모두에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해본 전문가들의 경험으로는,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은 미신이나 심리적 불편함 때문에 유해를 만지거나 옮기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 진주현 박사(법의인류학자) 인터뷰, 2017년 4월 11일.



TRANSITIONAL  
J U S T I C E  
WORKING GROUP

